

밀양 박준의 정체와 악장가사와의 관계

임 주 탁*

차 례

- | | |
|-------------------------|-----------------------|
| 1. 서론 | 4. 밀양 박준의 악서와 『악장가사』의 |
| 2. 밀양 박준의 악서 제작과 간행의 맥락 | 관계 |
| 3. 밀양 박준과 주세붕과의 관계 |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악서가 편찬되는 사회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밀양 박준’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악서는 『악장가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천착해 본 것이다. 『악장가사』 편찬자로 추정되기도 했던 ‘밀양 박준’은 최근에 이르러 『악장가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무엇보다 『악장가사』가 선조의 묘실 악장 <중광>이 지어진 이후에 편찬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장가사』에 남아 있는 여러 서지학적 특성은 그 저본이 임진왜란 이전에 편찬, 간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함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그 저본에 <중광> 악장을 침입하여 복각·간행한 것이 현전 『악장가사』일 가능성이 크다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6세기 전반기 향촌 사족 사회의 문화 풍토 쇄신 운동과 밀양 박준의 악서 제작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세붕을 중심으로 하는 향촌 사회 문화 풍토 쇄신 운동은 악서 수요와 맞물려 있었는바, ‘밀양 박준’의 악서는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밀양 박준’은 16세기 전반기 향촌 사족 사회 문화 풍토 쇄신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과 긴밀하게 교유한 인물로서, 기왕에 그 용도가 달리해서 편찬한 악서 인본 가운데 향촌 사족 사회에 필수적인 음악 레퍼토리를 골라서 한 편의 악서로 만들어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악이든 속악이든 동방의 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아서 간행한 악서는 『악장가사』가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밀양 박준’의 악서가 곧 『악장가사』 저본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그리고 ‘밀양 박준’이 활동한 무대는 주로 향촌 사족 사회 문화 풍토 운동이 가장 이른 시기부터 펼쳐진 경상도 남부 지역이었다. 그런 점에서 ‘밀양 박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 가운데 『퇴계선생문집고증』의 기록보다는 『밀양지리인물문한지』의 기록이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밀양 박준, 악장가사, 주세붕, 중광 악장, 한국 고시가

1. 서론

국문학계에서 ‘密陽 朴浚’이란 인물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樂章歌詞』의 편찬자일 수 있다는 추정과 관련이 있다. 李滉(1501~1570)의 <書漁父歌後>에 의하면, ‘밀양 박준’은 東方의 樂을 雅·俗으로 구분하여 모아 책을 만들어 간행했는데, 그 속에 <漁父歌(長歌)>가 <雙花店>과 섞여 있었다.¹⁾ 현전 『악장가사』는 아악과 속악으로 구분하여 편찬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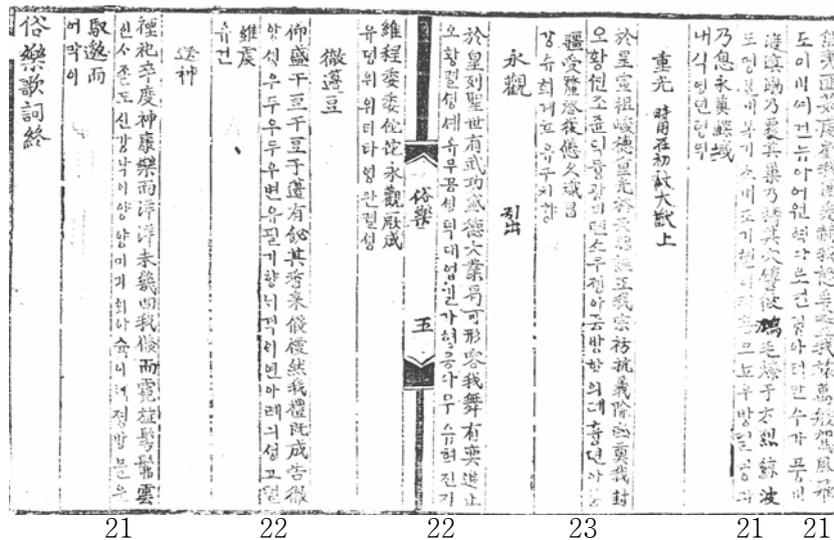
이고, 그 속에 이 두 편의 노래가 실려 있다. 그래서 ‘밀양 박준’의 책이 바로 『악장가사』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 생겨난 것이다.²⁾ 오늘날에는 이러한 추정이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현전 『악장가사』의 편찬 시기는 아무리 소급해도 임진왜란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반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현전 3종 『악장가사』 이본이 모두 仁祖代(1623~1649) 이후에 印刊된 것임은 사실이다.³⁾ 宗廟·永寧殿에 포함된 <重光> 악장⁴⁾이 이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광> 악장이 이 시기 이후에 添入되었다는 사실이 그 이전에 종묘·영녕전을 포함한 제례 악장이 樂書로 편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바로 뒷받침해 주지는 않는다. 악장을 포함한 악서의 復刊은 覆刻·補刻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사례는 『樂學軌範』(1493년 8월 撰定)의 복간(1610)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간은 이전의 활자판이 전할 때에는 수정할 부분의 張板만 보각해서 인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체 활자판을 복각하되, 수정 보완할 부분의 장판은 보각해서 인간하게 마련이다. 얼핏 보아 차이가 없는 듯한데도 두 『악학궤범』 판본이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⁵⁾은

-
- 1)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跋, <書漁父歌後>: 頃歲, 有密陽朴浚者, 名知衆音, 凡係東方之樂, 或雅或俗, 靡不哀集爲一部書, 刊行于世, 而此詞與霜花店諸曲, 混載其中.
 - 2) 『악장가사』의 편찬 주체와 시기를 둘러싼 선행 논의의 쟁점은 金明俊, 『樂章歌詞』의 成立과 所載 作品의 傳承 樣相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2-10쪽; 金명준, 『악장가사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4, 10-19쪽에 잘 갈무리되어 있다.
 - 3) 金明俊, 위의 논문, 174쪽; 金명준, 위의 책, 194쪽 참조.
 - 4) 宗系辨誣 문제를 해결하고 倭寇를 물리친 내용을 중심으로 宣祖의 공덕을 기린 악장이다.
 - 5) 이혜구,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16-17쪽에는 23곳을 적시하여 도표로 정리했다. 이 도표에 의하면, 선행 판본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도 있고 선행 판본에 없던 오류가 생긴 부분도 있다. 후자와 같은 오류는 주로 글자 획 하나가 빠진 것이다. 이 또한 1610년 복간이 복각·보각되어 인간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복간과정에서 복각·보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壬辰倭亂 이후에 많은 문헌이 복간되었다는 사실은 두루 알려진 바이다. 무엇보다 전란 중에 문헌과 冊板이 소실되었다는 것이 큰 원인이었다.⁶⁾ 만일 『악장가사』도 『악학궤범』과 마찬가지로 인조대 이후에 복각·보각해서 인간했다면, 그 底本の 편찬 및 최초 판각 시기는 이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현전 『악장가사』의 <중광>이 포함된 장판은 복각·보각의 흔적을 갖고 있다. ‘종묘·영녕전’의 판 장판에서는 모두 1행의 글자수가 23자로 일정한 데 비해, [그림 1]에서와 같이 <중광> 악장을 포함한 장판의 1행



[그림 1] <중광> 포함 장판 사진(사진 아래 숫자는 1행 글자 수)

6) 임진왜란에서 시작된 7년 전쟁으로 인해 서울의 궁궐과 종묘를 포함하여 국가의 각종 물적·인적 기반도 심각하게 와해했다. 다음 기록에서 그런 사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宣祖實錄』 宣祖 31년 3월 5일 庚寅: 當時宗廟丘墟, 社稷顛隳, 蓬蒿千里, 白骨如山, 尚可以用樂乎? 既已不知, 用之無謂, 今幸知之, 何可更用? 軍門之行·御史之還, 縱欲復聽前樂, 舉此大義而釋之, 有何所難, 而復有疑信於其間, 更欲用之於今日?

글갯수는 21자~23자로 들쭉날쭉하다. 이러한 현상은 3종의 이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되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는 이본 즉, 河合(가아이) 문고 소장 『俗樂歌詞上』⁷⁾의 인간과 편찬 시기가 비슷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새로 편찬하여 판각하고 인간하는 경우에 남아 있기 어려운 서지학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림 1]에서 <중광> 악장에 ‘格’의 諺釋이 ‘티’로 잘못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⁸⁾ 이 점은 <중광> 악장이 지어져 補入되기 이전에도 종묘·영년전 악장의 언석 印本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柳希春(1513~1577)이 편찬한 『新增類合』(1576)에 의하면, ‘格’의 訓音은 ‘틸 격, 니를 격’이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오류 자체는 ‘격’ 자의 ‘훈’과 ‘음’을 錯綜한 데서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원인이 무엇이든, 종묘 악장 언석 인본의 한자음 오류 문제는 孝宗代(1649~1659)에 중요 사안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權堧(1610~1675)의 상소에 의하면, 1651년 당시 ‘宗廟樂章歌詞冊’의 언석 인본은 한자음 오류가 적지 않았다.⁹⁾ 어명에 따라 편찬 혹은 인간된 종묘 악장은 ‘國朝樂章’이란 표제가 붙은 악서로도 전하는데, 여기에는 한자음을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석 인본은 악사와 악공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권우가 본 문헌은 『악장가사』의 ‘종묘·영년전’[俗樂歌詞上~俗樂歌詞終]과 같이 언석 인본의 ‘중

7) 金智勇 해제, 『속악가사(俗樂歌詞) 상(上)』, 明文堂, 2012. 이 문헌이 호사(蓬左) 문고 소장으로 알려지고도 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8) 서울대 가람문고 등에는 ‘俗樂歌詞’라는 표제를 가진 필사본이 2종 더 있다. 이 필사본에는 언석이 ‘격’으로 수정되어 있다. 참고로, 이 필사본에는 목차가 덧붙여져 있고, 이 목차에는 3종의 이본에 ‘雅樂歌詞’ 말미에 기록된 <納氏歌>와 <靖東方曲>이 俗樂으로 분류되어 있다.

9) 『孝宗實錄』 孝宗 2年 辛卯(1651) 9月 16日 庚寅: 掌樂院正權堧上疏曰, “伏以, 臣職是掌樂, 而全昧音律. 試閱衆樂之際, 謾不知調曲之爲如何, 而取見宗廟樂章歌詞冊諺釋印本, 多有誤音. 受釐之釐字, 詩傳小雅篇題及綱目, 皆以禧釋音, 而重光曲受釐啓後之釐字, 乃以尼釋音, 禧與尼兩音, 義意懸殊, 必是開刊時放過錯誤之致. 其他誤音, 非獨止此, 樂師等只憑諺釋, 而誦習, 承訛襲謬, 不知其字音之誤傳, 今始覺悟云. 太廟樂章, 何等重事, 而謬誤至此, 誠可怪也. (……).”

묘 악장¹⁰⁾이었던 듯한데, 권우는 한자음 오류를 <중광>에 포함된 “受釐啓後”의 ‘釐’의 언석이 ‘禧[희]가 아닌 ‘訶[이/니]로 잘못되어 있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¹¹⁾ 그런데 현전 『악장가사』는 해당 글자의 한자음은 ‘희’로 되어 있다. 그에 비해 ‘恪’ 자의 한자음은 ‘티’로 되어 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바로잡지 않고 사례로 들어 지적한 오류만 바로잡았으리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현전 『악장가사』가 권우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 간행된 종묘 악장을 포함한 언석 인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권우가 확인했던 ‘종묘 악장가사책’의 종묘악장 언석 인본이 『악장가사』의 ‘종묘·영녕전’으로 고쳐 간행된 것¹²⁾이 아니라 애초에 두 언석 인본이 서로 다른 경로로 간행, 전승되던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따라 편찬될 때 <중광> 악장에는 언석이 붙지 않은 형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종묘 악장 전체가 새롭게 기록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새로 기록된 종묘 악장이 새로 판각되어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

10) 언석이 붙은 『종묘악장(宗廟樂章)』 1책이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되어 있었다(이 필사 문서에는 『대악후보(大樂後譜)』에서와 같이 <용광(龍光)>·<정명(貞明)> 이 하나의 악장으로 합쳐져 있다). 필자는 그 복사본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장서각 문헌 목록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11) 당시 권우가 올린 글에는 바로잡아져야 할 音釋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괄호 안은 『악장가사』의 諺釋을 표시한 것이다). <隆化>: ‘山戎’의 ‘戎(농)→容, <宣威>: ‘陸梁’ ‘陸(늑)→隆, <神定>: ‘孰我’의 ‘孰(숙)→收, <奮雄>: ‘無拂’의 ‘拂(블)→佛, <寵綏>: ‘寵綏’의 ‘綏(유)→要, ‘壺漿用迎’의 ‘迎(영)→延, <送神>: ‘髣髴’의 ‘髴(블)→佛, ‘回我’의 ‘我(아)→耶. 권우는 악사 등이 언석에만 의지하여 외어 익혀 訛謬를 이어받고서도 잘못 전해진 것임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윤호진 역주, 『역주 악원고사』, 국립국악원, 2006, 279-280쪽(원문); 163-164쪽(번역) 참조.

12) 박순문은 해당 기사에 근거하여 “지금도 위 세 종류의 악장가사 책에는 重光曲에 있는 受釐啓後의 釐자 음을 모두 “희”로 달고 있어 위 권우의 상소에 따라 고쳐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 종류의 악장가사의 본만을 근거로 그 이전에 악장가사 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순문, 『박준과 악장가사』, 『密陽文化』 19, 밀양문화원, 2018, 51-52쪽.

지만, 권우의 상소는 그 이후에 ‘종묘악장가사책’ 언석 인본이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중광> 악장이 첩입되면서 종묘 악장 언석 인본이 새로이 간행되었다면, <중광> 악장이 첩입되기 이전에도 종묘 악장 언석 인본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언석 인본의 실수요자인 악사나 악공의 입장에서는 수정되거나 첩입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장판만 바꾸어 인간한 것이 여러 면에서 이점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광> 악장이 첩입된 종묘 악장 언석 인본도 모든 장판을 다시 판각하기보다는 수정·보완된 부분을 포함하는 장판만 새로 보각해서 인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현전 『악장가사』의 底本이 임진왜란 이전에 편찬되었을 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악장가사』가 임진왜란 이후에 편찬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임진왜란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음운 형태와 표기 양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도 다시 곰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표 1] 『악학궤범』과 『악장가사』의 <처용가> 표기 차이

	樂學軌範	樂章歌詞	備考
①	羅侯德	羅侯德	
②	相不語	常不語	2회
③	즈시여	즈이여	2회
④	깁어신	깁어신	
⑤	오슬어신	오을어신	
⑥	특애	특개	가스매
⑦	설미	설미	
⑧	바늘도	바를도	2회
⑨	지서	지어	4회
⑩	아비를	아비를	2회
⑪	綠李야	綠李여	
⑫	신고홀	싯고홀	

⑬	딕야라	딕여라	
⑭	자리를	자리틀*	*를
⑮	熱病大神이사	熱病神이아	
⑯	말오	마오	
⑰	어여러거저	어여너거저	

[표 1]은 『악장가사』에 실린 텍스트 중에 임진왜란 이전에 인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樂學軌範』 판본에도 실려 있는 <처용가> 텍스트를 비교한 것인데, 17군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³⁾ 무엇보다 『악장가사』를 기준으로 볼 때, ③④⑤⑨⑮에서 ‘△’이 ‘○’으로 대체되고 ⑥에서 분철이 연철 표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선행 논의에서는 이 차이가 『악장가사』가 조선 후기에 편찬되었다는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제외한 차이까지 시대 변화에 따른 음운 현상이나 표기 방식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⑥의 경우에 두 문헌 모두 ‘가스매’가 연철 표기되어 있다. 국어학에서는 16세기에 분철 표기가 나타나면서 연철 표기에서 분철 표기로 나아가는 것이 표기의 일반적인 변화 방향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⑥은 오히려 그 반대의 사례에 해당한다. 더욱이 世宗代(1418~1450)에 편찬된 문헌에도 분철 표기는 분명하게 존재했다. 이는 연철, 분철의 차이가 시대 변천에 따른 언어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밖에도 시대 변화에 따른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더 있다. 가령, ①, ⑧이 『악학궤범』의 표기가 틀린 것이라면, ②, ⑰은 『악장가사』의 표기가 틀린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두 문헌의 차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더욱이 15세기의 음운 표기법은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1576년에 편찬 인간된 『新增類合』(1576)은 그 이전 『訓蒙字

13) 『악학궤범』에는 한자에 언석이 붙어있지 않다.

會』(1527) 이전에 편찬된 『類合』의 한자음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에서 편찬되었는데, 이 문헌에도 ‘△’이 ‘○’으로 바뀐 사례가 적지 않다.¹⁴⁾ 1561년 무렵에 편찬되어 1572년에 간행된 『琴合字譜』에도 실려 있는 <鄭石歌>의 “노니○와지이다”에도 ‘스’는 ‘△’이 ‘○’으로 바뀌어 있다. 이는 <처용가>에 나타나는 음운 및 표기 방식에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임진왜란 이후 변화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변화된 것이거나 실제 음성을 반영한 표기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악장가사』 특히 ‘俗樂歌詞~俗樂歌詞終’(→속악가사)과 ‘歌詞上’(→‘가사’)은 모든 한자에 음이 달려 있다. 이는 이 악서가 악사나 악공이 참고하는 언석 인본으로 간행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¹⁵⁾ 이들이 참고하는 악서라면, 한자음도 실제 음성(‘鄉黨俚音=俗音’)을 반영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참고로, 고려의 歌典, 특히 鄉樂의 歌典의 경우에도 하나의 통로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통로를 통해 전승되었다.¹⁶⁾ 이는 악서의 수요

14) 『신증유합』에 나타나는 ‘△’→‘○’의 변화 문제는 위진, 『『新增類合』의 새김 고찰』,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7, 70-74쪽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15) <漁父歌>의 “雪鬢漁翁住浦間”의 ‘鬢’의 음이 ‘빈’이 아닌 ‘빙’으로 붙어있는데, 이는 『악장가사』의 언석 인간이 어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16) 다음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中外’에서 歌典을 구해 보충함으로써 ‘我朝之樂’이 40여 聲에서 50여 聲으로 확대되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世宗實錄』世宗 12年(1430) 2月 19日 庚寅: 堧又云, “樂書纂集一事, 臣所極慮. 今詳我朝所用三部之樂, 皆未整齊, 而雅部尤甚焉. (……) 至於我朝之樂, 其器物制度·歌詞曲折, 亦甚繁密, 雖舊有譜法, 書本相傳, 承誤失真, 舊時之樂, 殆盡亡失, 僅存者四十餘聲耳. (……) 願令中外悉求我朝舊時歌典, 如有詳悉舊本, 自告進呈者, 賞之以職, 則舊樂之缺, 庶可填補矣. 如此, 然後擇其歌曲之詞, 其中君臣道合·父子恩深·夫婦節義·兄弟友愛·朋友講信·賓主同歡, 發於性情之正, 有關於人倫世教者, 以爲正風, 其男女相悅·淫遊姦慝·逞欲無恥, 有愧於綱常者, 以爲變風. (……)”; 『世宗實錄』世宗 15年 9月 12日 辛卯: ○禮曹啓, “聲樂之理, 有關時政. 今慣習鄉樂五十餘聲, 竝新羅·百濟·高〈句〉麗時民間俚語, 猶可想見當時政治得失, 足爲勸戒. 我朝開國以來, 禮樂大行, 朝廟雅頌之樂已備, 獨民俗歌謠之詞, 無採錄之法, 實爲未便. 自今依古者採詩之法, 令各道州縣, 勿論詩章俚語, 關係五倫之正, 足爲勸勉者及其間曠夫怨女之謠, 未免變風者, 悉令搜訪, 每年歲抄, 採擇上送.”

가 궁중이나 조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악장가사』의 ‘속악가사’, ‘가사’와 같은 언석 인본 또한 한 시기에 어제 혹은 어명에 의해 편찬되지만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正韻·正音’에 기초한 음운 표기법에 충실한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근거로 삼아 『악장가사』 저본의 편찬 시기까지 임진왜란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전 『악장가사』가 복각·보각되어 인간되었을 가능성, 그 저본이 임진왜란 이전에 인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 <쌍화점>과 <어부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악서 가운데 언석 인본은 『악장가사』가 유일하다. 『樂學便考』도 두 작품을 모두 수록하고 있지만, 이 문헌은 가아이문고본 『속악가사상』보다는 늦은 시기에 편찬되었을 뿐 아니라, 筆寫本인 데다 언석 인본이 아니다.¹⁷⁾ 따라서 ‘밀양 박준’이 간행한 악서가 종묘 악장의 언석 인본도 포함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악장가사』 저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현전 『악장가사』의 저본이 된 판본의 편찬 시기는 여전히 해명되어야 할 논점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 논점과 관련하여 이 글은 ‘밀양 박준’은 누구이며, ‘밀양 박준’이 간행한 악서와 『악장가사』 저본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의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이전에 확인해 둘 점이 있다. <서어부가후>에서 이황이 ‘밀양 박준’이 악서를 편찬했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물론 ‘밀양 박준’이 『악장가사』의 편찬자일 수 있다는 주장은 반드시 현전 『악장가사』 자체를 두고 피력되어온 것은 아니다. 그 저본 편찬

從之.

17) 참고로 <楞嚴讚>을 제외하면 『속악가사상』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악학편고』에 수록되어 있다. 이 점은 <능엄찬>이 『악장가사』 저본의 편찬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어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하기 어렵다.

자가 ‘밀양 박준’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이황은 ‘밀양 박준’이 모여서 일부 책을 만들어 간행했다고 했을 뿐 악서를 편찬했다고 하지는 않았다. 동방의 악을 아악, 속악으로 모아서 한 부의 책으로 만들어 간행했다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보면 현전 『악장가사』의 세 공통부분(편의상 ‘아악가사’(雅樂歌詞~歌詞終), ‘속악가사’, ‘가사’로 일컫는다)의 서지학적 특징이 같지 않다. 우선, 공통부분의 편철 순서가 다르다. ‘속악가사-가사-아악가사’(『속악가사상』)의 순으로 편철된 것도 있고, ‘아악가사-속악가사-가사’(『악장가사』와 『아악가사』)의 순으로 편철된 것도 있다. 이는 세 부분이 분리되어 전해지기도 한 것임을 말해 준다. 둘째, ‘속악가사’·‘가사’와는 달리 ‘아악가사’는 언석 인본이 아니다. 이는 애초에 두 부분의 실수요자가 달랐음을 말해 준다. 셋째, ‘아악가사’와 ‘속악가사’·‘가사’의 장판의 행수가 8행과 9행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최소 두 부분이 편찬 주체와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넷째, 『악장가사』가 편찬 문헌으로서의 기본 요소를 빠뜨리고 있다. 새로 편찬하여 판각하여 인간하는 문헌에는 서문과 목차를 삽입하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이는 『악장가사』는 물론 그 저본도 새로 편찬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다섯째, ‘가사’에 ‘歌詞上終’이나 ‘歌詞終’과 같은 말이 판심에 새겨진 장본이 없다. ‘歌詞下’ 부분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서지학적 특성은 『악장가사』의 저본 또한 새로 편찬하여 인간한 것이 아니라 편찬과 인간 시기가 서로 같지 않은 인본들을 선별하여 하나로 묶은 형태였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서어부가후>의 ‘밀양 박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악서를 만들어 인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밀양 박준’의 악서가 『악장가사』 저본일 가능성도 여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정이 실제와 부합한다면, 撰者로서 ‘밀양 박준’의 역할은 희석될 것이다. 하지만 『악장가사』가 전하기 때문에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에 ‘鄉黨俚語’로 지어진 노래의 실체를 만

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찬자로서 역할은 희석되어도 ‘밀양 박준’의 역할은 결코 폄하될 수 없을 것이다.

2. 밀양 박준의 악서 제작과 간행의 맥락

樂院¹⁸⁾의 악공이 익히는 음악 레퍼토리는 鄉黨의 예능인들도 익혀야 한다. 국가에서 지정한 음악은 조정의 의례에서만 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향당에서도 연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당에도 조정과 유사하게 祭禮와 會禮, 宴禮가 있고, 그에 소용되는 음악을 연행하고 전승하는 樂人들이 있었다. 모든 향촌 의례는 향촌 사족이 주관하거나 혹은 향촌 사족과 지방관이 공동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出仕를 꿈꾸는 향촌 사족들은 이른바 鄉會를 통해 어릴 때부터 조정 음악을 익히게 마련이다. 아악은 물론 속악까지 당대 조정에서 연행되는 음악 레퍼토리가 향회를 매개로 연행되는 음악과 같은 것이어야 風化를 樹立하는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세기 전반기에는 향촌 사회에 文廟와 鄉校가 확대 설치되면서 鄉會¹⁹⁾가 활성화되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향촌 사족 출신의 각도 觀察使 혹은 監司였다. 15세기 후반기에는 金宗直(1431~1492)과 그 문인들을 중심으로 향촌 사족 출신 國人들은 李施愛의 亂(1467)을 계기로 폐지되었던 留鄉所를 다시 설치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유향소는 京在所와 함께 향회의 중심 공간이었다. 그런데 경재소와 유향소는 오히려 훈척의 지방 통제력만 가중하는 역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15세기 후반, 특히 成宗代(1469~1494)에 대거 중앙으로 진출한 향촌 士族

18) 조선시대의 음악을 관장하는 기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기구를 통틀어 ‘樂院’이라 부르고자 한다.

19) 향회는 국인과 향인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모임이었다.

들이 16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趙光祖(1482~1519)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오히려 경제소와 유향소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향촌 사회에 鄉約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己卯士禍(1519)에서 조광조는 희생되었지만, 이러한 향회 활성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확산했다. 그 운동은 향교의 정비와 확대와 서원의 건립, 향약의 보급과 확산 등으로 가시화되었다. 周世鵬(1495~1554)이 건립한 白雲洞書院이 紹修書院으로 賜額됨으로써 이러한 운동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書院²⁰⁾은 유향소의 기능을 대체하여 鄉人과 향촌 출신 國人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촌 사회의 문화 풍토를 쇄신하는 매개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이처럼 16세기 전반기에 향촌 사족 출신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를 쇄신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던 만큼,²¹⁾ 향촌 사회에는 조정에서 정하는 음악 레퍼토리의 수요도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文廟從祀에 쓰이는 아악은 물론, 각종 의례에 쓰이는 속악이 쓰이는 의례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밀양 박준’이 아악과 속악을 모아서 한 부의 책을 만들어 간행한 일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사적 맥락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할 듯하다.

16세기에는 지방에서 각종 문헌의 諺解 인본뿐 아니라 언석 인본도 간행되었는데, 이 역시 이러한 사회사적 맥락과 닿아있다. 그 전반기에는 金安國(1478~1543)에 의해 『呂氏鄉約諺解』 등 여러 가지 언해가 경상도에서 간행되었고, 그 후반기에는 柳希春에 의해 鄉黨俚語의 품으로 주로 古詩 등에서 쓰이는 한자어의 訓音を 밝혀 편찬한 『新增類合』이 황해도에서 간행되었다. 향촌 사회의 문화 풍토 쇄신은 鄉人이 國人과

20) 黃俊良이 新寧縣監으로 재직할 때 세운 서원이 白鶴書院인데, 『迂拙齋集』에는 朴漢柱가 지은 <遊白鶴書院>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臨臯書院>이란 제목의 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갑자사화 이전에 향촌 사회에 서원이 건립되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21) 그 와중에 중앙에 진출한 향촌 사족들이 조정 음악 레퍼토리를 바꾸려는 노력도 줄기차게 전개했음은 물론이다.

동일한 문화의식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시기 지방관이 주도해서 편찬하고 지방에서 인간한 언석 및 언해 인본은 향촌 사족들이 어릴 때부터 국민의 문화를 체득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밀양 박준’의 악서 편집 간행도 이러한 사업과 맞물려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계기는 풍기군수로서 서원 건립을 통해 향촌 사회 문화 풍토 사업을 전개했던 주세붕과 관련되어 있어 보인다. ‘밀양 박준’이 아악과 속악을 모아 한 부의 책으로 만들어서 간행한 시기가 1545년에 가까운, 이전 시기로 추정된다는 점이 그런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서어부가후>에 의하면, 이황은 ‘어릴 때’ 할머니를 위한 ‘壽席’에서 숙부 李堦(1469~1517)가 妓를 불러서 <漁父詞>를 연행하는 것을 들었다. 마음에 즐거움을 느껴 기록했으나 어려서 대강은 기록했을 뿐 全調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 점을 못내 아쉬워하다가 출사를 위해 상경했을 때 전조를 알고 있는 예능인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늙은 악공[老伶] 중에 자신이 기록했던 <어부사>를 해득할 수 있는 이를 만나지 못했다.²²⁾ 年譜에 의하면, 이우는 中宗反正(1506) 이듬해부터 老母 봉양을 위해 지방 관직을 자청하기 시작했다. 이후 10년 동안 잠시 중앙 관직에 나가기도 했지만, 주로 지방 관직을 전전했다.²³⁾ 숙부 이우가卒한 1517년에 할머니는 팔순에 가까웠다. 이황이 妓가 연행하는 <어부사>를 들었던 ‘壽席’은 할머니 古稀를 전후한 시기에 열린 잔치였던 것이다. 이황이 출사를 위해 상경한 것은 1527년(중종 22년)이었다. 그 이후에 이황은 蓮亭²⁴⁾ 등지로 다니면서 어릴 때 들었던 ‘어부사’를 온전하게 이해하

22)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跋, <書漁父歌後>: 往者, 安東府有老妓, 能唱此詞. 叔父松齋先生時召此妓, 使歌之以助壽席之歡, 滉時尙少, 心竊喜之. 錄得其槩. 而猶恨其未爲全調也. 厥後存沒推遷, 舊聲杳不可追. 而身墮紅塵, 益遠於江湖之樂, 則思欲更聞此詞. 以寓興而忘憂也. 在京師遊蓮亭, 嘗徧問而歷訪之. 雖老伶韻倡, 莫有能解此詞者. 以是知其知好之者鮮矣.

23) 그 시기에 이황은 숙부 이우에게서 論語를 배우기도 했다(1512).

24) ‘연정’은 많은 지역에 분포했던 듯한데, 다음 기록 중에 앞의 기록은 ‘연정’이 음

고 연행하는 예능인을 찾아다닌 것이다. 이황이 <어부사>를 다시금 만나게 된 계기는 李賢輔(1467~1555)가 손녀사위 黃俊良(1517~1563)을 통해 ‘밀양 박준’의 악서에서 <어부가>(장가)를 求得해서 刪改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었다. 이현보가 <어부가> 산개 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이황에게 자문했고, 최종 완성본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황은 <서어부가후>도 써 보낸 것이다.²⁵⁾ 이때가 1549년(명종 4년) 12월이었다.

이현보가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76세 되던 해, 곧 1542년(중종 37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어부가>의 서문에 의하면, 이현보는 ‘退老田間’한 뒤부터 ‘어부가’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集句한 古詩로 노래를 지어 婢僕들에게 익혀 연행해 보도록 했다. 그러다가 손녀사위 황준량한테서 ‘밀양 박준’의 악서에서 취득한 <어부가> 장가와, 그와 별도의 통로를 통해 취득한

악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주고, 뒤의 기록은 <서어부가후>의 ‘연정’이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中宗實錄』中宗 39年 1月 20日 己未: 夜三更, 檢詳李震從門隙啓曰, “議政府蓮亭牆後私家失火, 連燒四五家矣. 公廡切近處失火, 則即啓救之之意已傳教, 故雖非政丞之意, 臣適上直敢啓.” 傳曰, “下開門標信及出軍標信, 速令部將, 率軍三百, 留門奔救, 可也.”; 『太宗實錄』太宗 17年 閏5月 22日 丁丑: 罷監察鄭旅·元郁職. 初, 旅與郁以行臺, 會于水原, 府使朴剛生邀旅·郁于蓮亭, 烹羔置酒, 張弓設的, 召妓歌舞, 命中爭能. 至是事覺, 憲司請罪, 略曰: “旅·郁以糾察守令非法之任, 當農月禁酒之時, 先自犯令, 反與守令飲酒歌舞, 敢行非法, 殊失行臺之義. 剛生其在曩時, 與隣官守令越境聚會安養寺, 強勸燒酒, 致死金汶, 尙且不悛, 而今又不遵教旨, 乃與臺監飲射, 其爲不當莫甚, 請依律論罪.” 命罷旅·郁職, 剛生已曾受罪, 宜勿論. 뒤의 기록에 언급된 朴剛生(1369~1422)은 박중손의 할아버지다.

25) 산개 과정에서 이황은 장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단가에 대해서는 異見을 피력했다. 특히 이현보가 典據 없이 만들어 쓴 ‘濟世賢’이란 말은 曠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현보는 이황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산개 작업이 완성되자 이황에게 보여주었고(『聾巖先生文集』續集 卷之一 書, <與退溪>; 『退溪先生文集』卷之九 書, <答聾巖李相國>(1549)), 이황은 그 뒤에 발문(跋文) 성격의 글을 써서 돌려주었다. ‘書漁父歌後’라는 글 제목은 序跋類의 글이지만 편지와 같이 써서 보낸 것이어서 붙여진 것이다.

短歌를 구했는데, 이후에는 이전의 것은 모두 버리고 이를 산개하는 작업에 몰두했다.²⁶⁾ 行狀에 의하면, 황준량은 1537년 成均試에 入格하고 1540년에 式年文科에 급제했다. 이현보가 ‘퇴로전간’하기 이전에 출사한 것이다. 이현보가 ‘퇴로전간’한 후에 ‘어부가’에 적극적 관심을 보인 만큼, 황준량이 ‘밀양 박준’의 악서에서 <어부가>를 취해서 이현보에게 전한 시기는 1542년 이후 어느 해였을 것이다.

그리고 황준량은 상경하여 과거에 급제한 해(1540)에 權知成均館學諭·調星州訓導에 제수되었지만, 이때는 이현보가 ‘어부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이전이다. 1542년에 成均館學諭에 제수되고 1544년에는 學正으로 승진했으며, 1545년에는 承文院殿考로서 尙州教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1547년 가을에 상경하여 1548년에 工曹佐郎에 제수되었다. 이는 1542년에서 1547년 사이에 황준량이 주로 이현보 가까이 머물러 있었음을 말해 준다. 황준량은 공조좌랑에 제수된 해에 父親喪을 당해 귀향해서 삼년상을 치렀고, 1550년에야 다시 상경했다. 따라서 황준량이 ‘밀양 박준’의 악서에서 <어부가>(장가)를 취하여 이현보에게 전한 시기는 우선 1542년(중종 37년)에서 1548년(명종 3년) 사이로 좁혀 볼 수 있다. 부친 상중에 ‘어부가’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⁷⁾

26) 『聾巖先生文集』雜著 卷之三 歌詞, 漁父歌并序: 漁父歌兩篇, 不知爲何人所作. 余自退老田間, 心閒無事, 哀集古人觴詠間可歌詩文若干首, 教閱婢僕, 時時聽而消遣. 兒孫輩晚得此歌而來示, 余觀其詞語閒適, 意味深遠, 吟詠之餘, 使人有脫略功名, 飄飄遐舉塵外之意. 得此之後, 盡棄其前所玩悅歌詞, 而專意于此. 手自謄冊, 花朝月夕, 把酒呼朋, 使詠於汾江小艇之上, 興味尤真, 麴盡忘倦. 第以語多不倫或重疊, 必其傳寫之訛, 此非聖賢經據之文. 妄加撰改, 一篇十二章, 去三爲九, 作長歌而詠焉. 一篇十章, 約作短歌五闕, 爲葉而唱之. 合成一部新曲. 非徒刪改, 添補處亦多, 然亦各因舊文本意而增損之. 名曰聾巖野錄. 覽者幸勿以僭越咎我也. 時嘉靖己酉夏六月流頭後三日, 雪鬢翁聾巖主人, 書于汾江漁艇之舷.

27) <서어부가후>에 밝혀 놓은 ‘佐郎’은 1549년(명종 4년) 당시 황준량의 직함 곧 工曹佐郎을 가리킨다. 그런데 해당 문맥에서 이황이 황준량이 해당 관직에 있을 때 ‘밀양 박준’이 펴낸 악서를 전했음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기가 그보다

그런데 이황은 이현보가 <어부가>를 刪改할 시기에 70이 넘었다고 했을 뿐이다. 아직 팔순은 아니었다는 말인데, 이현보가 팔순이 된 것은 1547년(명종 2년)이다. 따라서 황준량이 '밀양 박준'의 악서에서 <어부가>를 취득하여 이현보에게 전한 시기는 아무리 늦춰 잡아도 1546년 이전이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이현보가 <어부가> 산개에 몰두했던 시기가 1548년에서 1549년 사이라는 사실과 얼핏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1544년 11월에서 1548년 6월까지의 國喪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다. 1544년 11월에 중종이 승하하고, 1545년 7월에 인종이 승하했다. 삼년상을 치렀다면 국상 기간은 1548년 6월에 끝난다. 국상 중에 이현보가 <어부가>를 산개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부가> 산개 작업이 1548년 하반기에 시작된 사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황준량이 '밀양 박준'의 악서에 포함된 <어부가>를 취득해서 이현보에게 전한 시기는 1542년에서 1545년 사이로 더 좁힐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어부가>를 산개한 시기가 1548년 하반기에서 1549년 상반기 사이였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서어부가후>에서 이황은 '밀양 박준'의 악서가 간행된 시기를 '頃歲'라고 밝혀 놓았다. 바로 전해였다면 '去年' 정도로 표현했을 것인바, 그렇지 않았으므로 그보다는 이전이되 1549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라서 '몇 해 전' 정도를 나타내는 '頃歲'라는 말을 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1545년에 가까운, 이전 시기로 더 좁혀 볼 수 있다. 그 시기가 황준량이 그 속에서 <어부사>를 취득한 시기와 시간 간격이 크지 않음은 물론이다.

154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 수년 동안 주로 고향 근처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황준량이 '밀양 박준'의 악서를 한양에서 접한 것이 아니었을

이전이지만 <서어부가후>를 쓴 시기에 황준량이 해당 관직에 있었음을 말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그 시기에 황준량이 周世鵬(1495~1554)과 매우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사실이다. 주세붕은 1541년부터 豊基郡守로 재직하다가 중종이 승하한 이듬해(1545) 5월에 入都 소환되었고, 같은 해 곧 인종이 승하한 해 11월에 成均館司成知製敎에 제수되어 상경하면서 풍기를 떠났다. 햇수로 5년 동안 풍기군수로 재직한 셈이다. 그 사이 주세붕은 향촌 사회의 문화 풍토를 쇄신하는 사업에 열정적이었다. 그 사업에 음악적 수요가 따랐음을 물론이다. 황준량의 행장에 의하면, 풍기는 高祖부터 정착했던 고향이었다. 주세붕과 황준량은 풍기군수와 풍기가 낳은 수재의 관계였다.²⁸⁾ 그런 관계에서 주세붕은 황준량과 易書を 함께 읽기도 했다(1544년 4월~1545년 9월).²⁹⁾ 또 白雲洞書院을 창건(1542)한 이후 주세붕은 『竹溪志』 편찬 사업도 추진했는데, 이 문헌은 1544년 10월에 편찬되었다. 이때 황준량은 그 책 속에 安軸(1282~1348)의 <竹溪別曲>을 넣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文貞珠履高陽之曲’은 한때 善謔에서 나온 것뿐이어서 후세에 부를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논지였다.³⁰⁾ 이에 주세붕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신뢰해 줄 것을 바라는 취지의 답장을 썼다.³¹⁾ 이처럼 황준량은 1542년에서 1545년 사이에 아주 가까워서 주세붕과 직·간접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다. 둘 사이에 매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주세붕은 스스로 <竹溪辭>와 <道東曲>을 지어,

28) 두 모친이 모두 창원황씨(昌原黃氏)였다.

29) 연보에 의하면, 1544년 4월에 황준량과 주역을 읽었다. 그런데 원집(原集)의 <독역(讀易)>(3수)의 주석에 의하면, 1545년 9월 11일에 황준량과 함께 묶으며 주역을 읽었다. 주역을 읽는 시기가 두 해에 걸쳐 있었던 듯하다.

30) 『錦溪先生文集』 卷之四 雜著, 上周愼齋論竹溪志書. 황준량은 <죽계별곡>이 고려 시대에 지어진 것인데도 조정에서 정한 음악 레퍼토리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사실은 조정에서든 향당에서든 <죽계별곡>이 연행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1) 물론 황준량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노래로써 安珣(1243~1306)을 祭祀하도록 했다.³²⁾ 이들 노래는 속악으로 분류된다. 서원은 문묘를 갖추어 文宣王 곧 孔子에 대한 제례 곧 釋奠祭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석전제에서 쓰는 음악은 아악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노래로써 제사하는 의례를 만든 것을 보면, 주세붕은 제례에 쓸 아악과 속악의 노래를 지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악서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544년 4월 풍기군수 주세붕이 청량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遊清涼山錄>은 당시 향촌 사회에서 향유된 음악, 특히 제례 이외의 공간에서 연행된 음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더 생생하게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①嘉靖 甲辰(1544) 4월 초9일 丁丑일. 청량산 유람을 위해 일찍 풍기군에서 출발했다. 郡齋에서 배웅한 사람은 書生인, 醴泉 張應門, 密陽 李鶴齡, 咸陽 朴承元, 豐基 權叔鸞, 咸安 李機, 漆原 裴億, 漢陽 閔宗中, 密陽 柳芬, 醴泉 權貽壽·權好金이었고, 따라온 사람은 延城 李愿, 天嶺(咸安) 朴淑良, 臨瀛(江陵) 金八元 및 阿博(周博博, 주세붕의 양아들) 등 4인이었다. 이날 承文院著作 朴承侃, 承政院注書 朴承任 형제가 茶禮를 차려 榮親했다. 그 형 朴承健·承俊 또한 癸卯生員, 1543에 뽑혀 축하하는 의례를 겸했다. 와서 모인 이는 安東府使 趙世英, 醴泉郡守 金洪, 榮川郡守 李楨, 奉化縣監 李宜春, 三嘉縣監 黃士傑, 禮安縣監 任瑄臣, 安奇察訪 潘碩權, 昌樂察訪 許砬, 前司諫 黃孝恭, 前典籍 秦淵 및 4鄉 父老들이었다. 나 또한 가서 모였다. 龜臺 상류에 잔치를 열고 물가에 자리를 폈다. 내외 모두 축하했다.

②小伶으로 하여금 宇民樓에 올라 피리를 불게 했는데, 그 소리가 맑아 날아서 月桂樹를 돌렸다. 福州妓 卓文兒라는 이가 나와 같은 乙生(乙卯, 1495)인데 술 한 동이를 사서 안고 와서는 “오늘 밤, 선생께서 高興을 발할 터인데 老妓의 흥도 다시는 알지 않습니다.” 드디어 잔을 내어 크게 취했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만일 『大學』을 외지 않으면 방탕해질

32) 『武陵雜稿』附錄 卷之二, 年譜 二十一年(中宗三十七年) 壬寅(先生四十八歲): “作竹溪辭·道東曲. 使歌以祀之.”

가 염려됩니다.” 했다. 드디어 『대학』을 암송했다. “其心休休，以義爲利” 등의 말에 이르자 번번이 세 번 길게 읊조려 옛날에 대한 감회가 있었다.

③公(李賢輔)이 문밖에까지 나와 맞아서는 끌어서 바둑 두는 자리에 앉혔다. 음식을 시키고 이어 술을 가져오게 했다. 큰 여중은琴을, 작은 여중은箏을 타게 하고, 歸來辭를 부르기도 하고 歸田賦를 부르기도 하며 李賀의 將進酒를 부르기도 하고 蘇雪堂(蘇軾)의 “杏花飛簾散餘春”을 부르기도 했다. 그 아들 文樑(字 大成)이 모시고 앉아, 역시 壽曲을 불렀다. 나와 大成은 일어나 춤을 추었다. 공도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공은 春秋가 일흔여덟으로 우리 아버지와 동갑이어서 흥이 더할수록 슬픔도 더했다.

④克一庵에 들었다. 돌층계를 오르니, 老松이 있었는데 높이가 천 尺, 둘레가 열 아름이나 되었다. 風穴이 암자 뒤에 있었는데 매우 險絶했다. 李愿 일행이 먼저 오르고, 나와 吳仁遠이 뒤따랐다. 굴 어귀에는 판자가 두 개 있었다. 전하는 말에 崔致遠이 앉아서 바둑을 둔 판자인데 판자가 굴속에 있어서 천년을 썩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굴 깊이는 헤아릴 수 없고 아득히 창공에 닿아있었다. 오인원이 피리 부는 이에게 步虛子를 불게 했다. 또, 제생에게는 노래나 춤을 추게 했다. 노래와 피리가 서로 다투어 울림소리가 공중에 떨어졌다. 일행은 매우 즐거웠다.

⑤壬午日. 서쪽으로 普賢庵에 들었다. 당 앞에 바위가 있는데 두 사람이 앉을 수 있었다. 나와 오인원이 바위 위에 앉고 제생은 암 내에 흠어져 앉았다. 흰옷 입은 사람이 술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任宣城 調元이 보낸 것이었다. 술을 마시려는데 두 生이 왔다. 하나는 李國樑 곧 농암 조카이고, 하나는 吳守盈 곧 오인원 아들이었다. 이생(이국량)이 소매에서 龔巖書를 꺼냈는데 곧 공이 장난삼아 지은 노래로 이생한테 노래하게 하고 들었던 것이다. 이에 선성의 술을 마시며 福州의 管을 연주하게 하고 이생에게는 농암의 노래를 부르게 하니, 역시 산중의 한 奇興이었다. 또 중 祖安이라는 이가 金剛山에서 왔다. 丙申年(1536)에 나를 따라 伽倻山에 올랐던 이다. 소매에서 내 시를 꺼냈다.

⑥阿博과 李國樑, 吳守盈, 이원, 박숙량, 김팔원 등 5生이 溫溪에서 묵고 와서 모였다. 龔巖相公이 大成을 데리고 가마를 타고 방문했다. 琴萬戶(琴致韶)는 나이 여든다섯인데도 역시 찾아왔다. 佛宇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각각 儀禮를 행했다. 상공은 따로 산행 도구를 내놓았는데, 매우

간단하면서도 잘 갖추었다. 여러 물품을 건네서 그릇을 만 데서 구하지 않았다. 또 물 타지 않은 술을 주었다. 모두 신선의 맛이였다. 술이 반나 마 취했을 때 두 아들 문량, 국량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노랫소리가金石에서 나온 듯했다. 제생이 모두 일어나 춤을 추었다. 琴叔은 아흔인 데도 춤을 출 수 있었다. 역시 세상에 드문 일이다. 나와 아박, 이원, 박수량, 김팔원은 이날 저녁에 군으로 돌아왔다.³³⁾

①은 당시 ‘郡齋’를 매개로 학업을 하는 學生(‘諸生’)이 적지 않았다는

33) 『武陵雜稿』卷之七〇原集 雜著, 遊清涼山錄: 嘉靖甲辰(1544)四月初九日丁丑, 將遊清涼山. 早發豐基郡. 郡齋送之者, 書生醴泉張應門, 密陽李鶴齡, 咸陽朴承元, 豐基權叔鸞, 咸安李機, 漆原裴億, 漢陽閔宗中, 密陽柳芬, 醴泉權貽壽·權好金. 從行者, 延城李愿, 天嶺(咸安)朴淑良, 臨瀛(江陵)金八元及阿博四人. 是日, 承文院著作朴承侃, 承政院注書朴承任兄弟, 設茶禮以榮親. 其兄朴承健·承俊, 亦中癸卯生員, 兼舉慶禮. 來會者, 安東府使趙世英, 醴泉郡守金洪, 榮川郡守李楨, 奉化縣監李宜春, 三嘉縣監黃士傑, 禮安縣監任鼎臣, 安奇察訪潘碩權, 昌樂察訪許砮, 前司諫黃孝恭, 前典籍秦淵及四鄉父老. 余亦往會. 設宴于龜臺上流, 臨流展席. 外內具慶. (……) 使小伶登字民樓, 吹笛. 其聲瀏瀏, 飛徹月桂. 有福妓卓文兒者, 與余同乙生, 貨得一樽抱來曰, “今夜, 老子似發高興. 老妓興復不淺.” 遂開酌大醉, 適曰, “若不誦大學, 恐其流也.” 遂令誦大學. 至其心休休, 以義爲利等語, 輒三復永嘆, 有慨於前古也. (……) 入克一庵. 登石梯, 有老松千尺, 大可十圍. 風穴在庵後, 極險絕. 李愿輩先登, 余與仁遠繼之. 穴口有二板, 傳云崔致遠所坐圍棋之板, 板在窟中免雨, 故能千載不腐. 穴深不可測, 迥臨碧虛. 仁遠令笛者, 吹步虛子, 又使諸生或歌或舞. 歌笛爭競, 響落半空. 一行歡甚. (……) 壬午. 西入普賢庵. 堂前有巖石, 可坐二人. 余與仁遠坐巖上, 諸生散坐庵內. 有白衣持酒來, 卽任宣城調元所送也. 方開酌, 有二生來. 一李國樑, 龔巖之姪, 一吳守盈, 仁遠之子. 李生袖出龔巖書, 乃公戲作歌, 使李生歌, 而聽之者. 於是酌宣城之酒, 奏福州之管, 使李生歌龔巖之歌, 亦山中之奇興也. 又有僧祖安, 自金剛山來. 丙申歲, 嘗從我登伽倻者. 袖出吾詩. (……) 公出迎門外, 引坐圍棋. 命之食, 繼之以酒. 使大婢按琴, 小婢撫箏. 或歌歸來辭, 或歌歸田賦, 或歌李賀將進酒, 或歌蘇雪堂杏花, 飛簾散餘春. 其子文樑字大成, 侍坐. 亦歌壽曲. 余與大成起舞. 公亦起舞. 公之春秋七十八. 乃吾先年也. 愈爲之興懷悲梗. (……) 阿博與國樑·守盈·愿·淑良·八元五生, 宿溫溪來會. 龔巖相公率大成, 肩輿臨訪. 琴萬戶年八十五, 亦來尋. 開酌佛宇, 各行禮. 相公別出遊山具, 至簡而能備. 羞列諸品, 器不求外, 且侑以醇醪, 皆神仙味也. 酒半, 令二子文樑·國樑, 歌之. 歌聲若出金石, 諸生皆起舞. 琴叔九十能舞, 亦人世所罕也. 極歡而出. 余與阿博·愿·淑良·八元, 是夕還郡. (……)

사실을 보여준다. 열거한 서생 가운데에는 이후 과거를 통해 출사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³⁴⁾ 또한, 지역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내직을 제수받는 일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경사로 인식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네 형제가 모두 중앙 관직을 제수받는 일은 특별한 사례였겠지만, 주세붕을 비롯한 원근 지역의 지방관들이 찾아와 축하를 해 주는 풍경은 지방관들과 향인, 향촌 사족 출신 국민과의 상호 유대관계가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②는 이러한 유대관계 속에서 열리는 모임에 樂工과 老妓가 참석해서 군수를 비롯한 일행들과 어울렸음을 보여준다. ③은 이현보의 집에서 벌어진 놀이마당에서 婢僕들이 琴과 箏 등으로 반주하는 음악에 맞춰 참석자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복들이 금과 쟁을 갖고 있으며 연주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奏法뿐 아니라 그 악기를 맞춰 연주할 악곡 또한 일정하게 숙지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른바 향촌 사족 사회에서 향유된 음악과 조정(관) 음악 사이에 間隙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④는 악공의 반주에 맞춰 서생들을 비롯한 향촌 사족들이 한시 노랫말로 지어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문화가 일반화되었음을 시사한다. <步虛子>는 조정에서 전한 음악 레퍼토리의 하나임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한시를 엮어 부르는 악곡 또한 <步虛子>처럼 조정 음악(속악)으

34) 이들이 관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貫鄉+姓名’의 지칭어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밀양 박준’이 ①에서 열거된 인물과 같이 書生이었을 가능성과 아울러, ‘밀양’이 관향을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성+지명’의 지칭어도 널리 쓰였는데, 이 지칭어에서 ‘지명’은 自號(『武陵雜稿』卷之六〇別集 書, <答李龔巖>)가 아닌 경우에는 관직과 관계가 깊다. 가령, ‘魚密陽’(『武陵雜稿』卷之五〇原集 書, <與魚密陽(得江)>), ‘朴密陽’(『武陵雜稿』卷之六〇別集 書, <答朴密陽(世煦)>)은 ‘密陽府使 魚得江’, ‘密陽府使 朴世煦’ 등을 줄여서 일컫는 지칭어였다. 어득강(1470~1550)과 박세후(1494~1550)의 관향은 각각 咸從과 尙州였고, 각 지칭어가 쓰일 때 모두 밀양부사를 지내고 있었다. ①은 또한 ‘밀양 박준’이 풍기군의 군제에서 수확하는 서생은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로 연행되는 것이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⑤는 이현보가 지어 아들에게 부르도록 했던 <聾巖歌>가 안동부에 소속된 예능인의 악기 반주로 연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⑥과 함께 고려하면,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우선, 이현보의 비복들이 익히고 있던 음악이 안동부의 예능인들이 전승하는 속악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古詩를 엮어 부르는 속악과 우리말을 엮어 부르는 속악의 악곡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뒤의 가능성은, 비록 한참 이후의 시기에 지어졌지만, 尹善道(1587~1671)의 <漁父四時詞>(1651)가 장가의 후렴을 공유하면서도 노랫말은 단가 형태와 흡사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다. 같은 곡이되 시를 엮어 부를 때는 腔調로, ‘이속의 말[俚俗之語]’로 엮어서 부를 때는 葉調로 연주했을 수 있다. 이황이 <陶山六曲> 前後曲을 지으면서(1565) ‘腔調’에 맞지 않을지 염려한 것이나³⁵⁾ 이현보가 <어부가> 단가를 ‘葉으로 삼아서 불렀다’(1549)³⁶⁾라고 한 말은 이런 맥락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³⁷⁾

⑥은 이현보, 금숙 등 지역 원로들이 본인과 자녀를 동반하여 군수의 유산에 참여하여 군수를 수행하는 서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향촌 사회의 전·현직 국인과 향인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군수 등 외직을 수행하는 현직 관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관계에서 會集³⁸⁾하는 할 때마다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따라서 ⑥은 그 노래와 춤의 바탕이 되는 음악을 전·현직 관료는 물론 향인도 대체로 이해하고 있었

35)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跋, <陶山十二曲跋>: 又未信其可以入腔調, 諧音節與未也.

36) 『聾巖先生文集』 雜著 卷之三 歌詞, <漁父短歌(五章)>: 約作短歌五闕, 爲葉而唱之.

37) <龍飛御天歌>는 물론, 鄭顯爽의 『教坊歌謠』는 동일 곡에 漢詩를 엮어 부르기도 하고 鄉黨俚語의 노래를 엮어 부르기도 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38) 金絳(1488~1534)가 <花田別曲>에서 이른바 ‘鄉村會集’과 같은 것이다.

을 뿐 아니라 군 혹은 부에 소속된 악공, 노기 등³⁹⁾도 익혀 전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운동 건립 사업 추진(1542)을 계기로 주세붕은 풍기를 비롯한 경상도 중북부 지역의 문화 풍토를 쇄신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였다. 풍토 쇄신은 程朱學을 중심에 둔 학업을 수행하는 젊은 사족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가시화하게 마련인데, <유청량산록>은 인적 네트워크가 鄉人 사이에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鄉人과 國人 사이에도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것이 음악이었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주세붕이 지역 문화 풍토를 쇄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래를 짓는 데 바탕이 되는 악서를 갖고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무렵에 주세붕은 ‘雙花店淸歌之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주세붕은 물론 이황도 <쌍화점>을 언급한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주세붕이 ‘밀양 박준’의 악서를 통해 <쌍화점>을 비롯한 淸歌⁴⁰⁾를 알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황은 ‘雙花店’을 ‘霜花店’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주세붕이 악서를 통해 직접 인지한 데 비해 당시 이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雙’과 ‘霜’은 주세붕과 이황 시대의 한자음은 ‘쌍’으로 동일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귀로만 들으면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법이다.⁴¹⁾ 이황은 <어부가>(장가) 또한, 귀로 들을 때 즐리지만 <쌍화점>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모두 귀로 들어본 경험은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두 편의 노래를 모두 들어보

39)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악서 언석 인본을 갖고 음악을 배웠을 것이다.

40) 淸歌란 어린 妓의 맑고 높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다.

41) 경상도 사람이 ‘쌍’의 발음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 풀이하는 것은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다(李佑成, 『高麗末·李朝初의 漁父歌: 唱과 詠을 通해본 『士大夫文學』의 性格의 一端』, 『成大論文集』 9, 성균관대학교, 1964, 5-28쪽에 의하면, 李家源은 그렇게 풀이했다.). 따라서 이러한 착오를 근거로 ‘밀양 박준’과 『樂章歌詞』가 관계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기는 했어도 이황은 <쌍화점>을 기록한 악서를 눈으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더 이상의 판단은 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에 비해 주세붕은 ‘밀양 박준’의 악서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노래 이름을 정확하게 밝혔을 뿐 아니라 <쌍화점>을 포함한 ‘淸歌之屬’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주세붕이 ‘밀양 박준’의 악서를 갖고 있었으리라는 추정은 ‘밀양 박준’과 주세붕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한층 더 많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과연 ‘밀양 박준’은 누구일까, 그는 주세붕과 어떤 관계였을까? <유청량산록>에는 양아들 周博(1524~1588)만이 등장하고 ‘밀양 박준’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밀양 박준’이 당시 경상도 중북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은 아니었으리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3. 밀양 박준과 주세붕과의 관계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문헌 가운데 <서어부가후>에 언급된 ‘밀양 박준’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둘이다. 하나는 “號는 柏堂, 吏曹判書, 楊州에서 살았으며, 音律에 뛰어났다.”⁴²⁾라고 한 柳道源(1721~1791)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密陽 風流洞 사람이라고 한 『密州地理人物文翰誌』의 기록이다.⁴³⁾ 전자가 1788년 무렵의 기록⁴⁴⁾인 데 비해, 후자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기록을 인용한 여러 『密州誌』 중에는 1932년에 간행된 것도 있지만, 최초

42) 『退溪先生文集攷證』 卷之七 第四十三卷 跋, <書漁父歌後>(漁父歌九章. 短歌五章. 并有先生手筆刊行本): 朴浚 號柏堂, 官吏判, 居楊州, 善音律.

43) 『密州地理人物文翰誌』 卷之一: 風流洞別座閣 所居. 漁父詞跋云, 古有朴浚者, 名知衆音, 凡係東方之樂, 或雅或俗, 非不裒集, 爲一部書, 刊行于世云. 俊此乃村人也. 筆寫本(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44) 『退溪先生文集攷證』 退溪先生文集攷證凡例 附識: 戊申(1788)正月上澣, 後學完山 柳道源, 謹識.

로 기록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⁴⁵⁾

그런데 유도원의 고증에서처럼 ‘밀양 박준’이 ‘이조판서’에까지 오른 인물이라면 밀양 박씨 족보를 비롯한 문헌에도 실려 있을 법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밀양 박씨 중에서 ‘백당’이란 호를 가지고 이조판서⁴⁶⁾를 지낸 인물로는 朴仲孫(1412~1466)이 있을 뿐이다.⁴⁷⁾ 밀양이 貫鄕일 뿐 아니라 家鄕의 하나였다. 그 집안은 고모가 世宗의 후궁이 되면서 왕실 외척이 되었다. 딸도 和義君 李璵와 혼인했다.⁴⁸⁾ 하지만 박중손은 호가 ‘백당’보다 ‘默齋’가 더 알려져 있었으며, ‘박준’이란 이름(가령, ‘初名’)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 또, 역사적 인물을 설명할 때에는 現職이든 사후 贈職이든 최고 관직을 적시하게 마련인데, 박중손의 최고 品職은 密山君⁴⁹⁾이다. 따라서 유도원이 고증한 ‘밀양 박준’이 박중손과는 다른 인물임이 분명하다.

『朝鮮王朝實錄』에는 16세기에 활동했던 ‘박준’이란 인물에 관한 기록이 여러 곳에서 찾아진다. 하나는 仁宗妃(→恭懿大妃)의 이복형제 朴浚에 관한 기록이다. 『宣祖實錄』에 의하면, 선조가 備忘記를 전하여 공의 대비가 이복동생의 아들인 ‘박준 형제’를 염려한다고 말을 전하자 형 ‘박준’은 이미 관직을 제수받았고 동생 朴滋는 어려서 관직을 제수할 수 없다고 했다.⁵⁰⁾ 1573년의 일이다. 공의대비의 아버지 朴壙(朴壕, 1468~1524)의 묘는 楊州에 썼다.⁵¹⁾ 양주가 이 집안의 世居地였기 때문이다.

45) 『밀주지리인물문한지』는 ‘密州舊誌’라고 불리기도 한 것을 보면, 1932년보다는 앞선 시기에 편찬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편찬 시기는 비정하기 어렵다.

46) 『世祖實錄』 世祖 1年 閏6月 23日 丁卯: (以)朴仲孫(爲)吏曹判書.

47) 『沙村先生文集』 卷之六 行狀, <伯從兄學生公行錄>: 諱仲孫, 號默齋, 又號柏堂, 吏判, 封密山謚恭孝.

48) 『世宗實錄』 世宗 18年 丙辰(1436) 10月 8日 庚午: 和義君璵, 親迎監察朴仲孫之女.

49) 『世祖實錄』 世祖 7年 11月 17日 癸丑: 以朴仲孫爲密山君.

50) 『宣祖實錄』 宣祖 6年(1573) 5月 10日 己丑: 備忘記傳曰, “恭懿王大妃, 以朴浚兄弟爲念, 朴浚, 已賜職矣. 朴滋, 相當職除授可也.”

하지만 ‘박준’이 현직으로 이조판서에 올랐다는 기록은 없다.⁵²⁾ 또한, 이 ‘박준’은 관향이 밀양이 아니라 공의대비와 같이 潘南[羅州]이었다. 따라서 이 ‘박준’(이하 ‘반남 박준’) 또한 <서어부가후>의 ‘밀양 박준’과는 관계없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선조실록』에는 6차례 더 朴浚이란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 각 기록의 ‘박준’이 ‘반남 박준’과 동일인인지 아닌지 確斷은 어렵지만,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 ‘박준’의 행적은 1591년~160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선조 24년(1591)의 기록⁵³⁾에서 함께 거론된 南彦經(1528~1594)⁵⁴⁾과 동년배였다고 보면, 이 ‘박준’은 1573년 무렵 관직을 갖고 있던 ‘반남 박준’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후 박준은 高陽郡守(1594)⁵⁵⁾, 寧越郡守(1601, 1602)⁵⁶⁾, 長湍府使(1604)⁵⁷⁾,

51) 『國朝人物考』 朴塘 碑銘(鄭士龍 撰).

52) 『眉巖日記』 3, 己巳(1569): 九月二十八日 陰, 午後微雨. 朝飯後發行, 行四十餘里, 到水原沙斤乃院. 水原支供亦出. 日暎, 以雨裝出. 申末入水原, 兩官皆出外. 暮, 判官朴浚·巨源, 來自洛中. 余素聞其賢, 卽與相見于西軒. 前主簿宋琳 亦邂逅, 飲酒對飯. 府使李公楫, □□自社倉馳來相見. 納名于夫人, 相與談酌. 二更乃罷. □: 관독 불가. 이 기록에 등장하는 ‘朴浚(字, 巨源)’은 朴滋의 형 ‘潘南 朴浚’과 동일인인 듯하다. 원문은 朝鮮史編修會 편, 『眉巖日記草』 二(국학자료원 영인, 1982), 124쪽에서 재인용. 번역은 이백순 역, 『미암일기』, 담양군, 2004, 112쪽을 참조할 것. 이 번역에서 ‘巨源’이라는 자를 뺐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유도원이 고증한 ‘박준’은 이 인물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53) 『宣祖實錄』 宣祖 24年(1591) 2月 11日 戊寅: 禁府郎廳啓曰, “前日南彦經(1528~1594)·朴浚等, 以定冶匠於逆賊家, 致令打造軍器之罪, 自本府推鞠矣. 今者成天社, 前爲全州判官時, 定送冶匠除官, 役於逆賊家, 已捧承傳矣.” 傳曰, “依前例, 推鞠.”

54) 『退溪先生文集』 卷之十五에는 이황은 남언경에게 보낸 7편의 편지가 실려 있다. 이는 1570년 이전에 이황이 남언경과 교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55) 『宣祖實錄』 宣祖 27年(1594) 2月 5日 甲寅: 吏批(判書金應南·參議李礪·都承旨張雲翼), 以成泳爲判決事, 鄭曄爲軍資監僉正, 黃汝一爲刑曹正郎, 黃是爲兵曹正郎, 李邦柱爲古阜郡守, 閔說爲樂安郡守, 朴浚爲高陽郡守, 金繼賢爲鳳山郡守, 李舜賓爲水原判官.

尙州牧使(1604)⁵⁸⁾ 등을 지냈다. 거듭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승진해 갔다. 그런 점에서 이 ‘박준’이 ‘반남 박준’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四留齋集』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黃海道招討使 李廷龜(1541~1600)이 ‘進士 朴俊’의 집에 묵은 적이 있었는데,⁵⁹⁾ ‘진사 박준’은 이정암과 같이 武科 출신이면서 그의 셋째 사위였다.⁶⁰⁾ 이 ‘진사 박준’이 『선조실록』에 6차례에 걸쳐 ‘朴浚’으로 기록된 인물이다.⁶¹⁾ 따라

56) 『宣祖實錄』 宣祖 34年(1601) 9월 28일 壬戌: 李純信爲水原府使, 鄭倬度爲高陽郡守, 朴浚爲寧越郡守, 柳永成爲楊根郡守; 『宣祖實錄』 宣祖 35年(1602) 4月 21日 壬子: 憲府啓曰, “當此農時, 守令不可久曠. 目今窳闕, 多至七邑, 該曹趁未差出, 極爲未便. 請命斯速差出, 催促赴任. 寧越, 自亂後, 蕩然無形. 苟非其人, 決難蘇復. 郡守朴浚, 以到處見敗之人, 赴此凋瘵之地, 猶不懲艾, 專事剝削, 民不聊生, 闔境怨咨. 請命罷職, 其代十分擇遣.” 答曰, “依啓.”

57) 『宣祖實錄』 宣祖 37年(1604) 閏9月 10日 丁亥: 以趙應文爲成均館司成, 李籲爲成均館直講, 尹應瑞爲都摠府經歷, 李春榮爲都摠府都事, 鄭元卿爲翊衛司司禦, 沈關爲司憲府監察, 沈完忱爲翊衛司翊衛, 李廷臣爲廣州牧使, 朴浚爲長湍府使, 李惟弘爲竹州府使, 洪昌世爲永川郡守, 李惟義爲白川郡守, 柳命男爲泰仁縣監, 李德沂爲木川縣監, 權述爲月申僉使, 韓汝徵爲忠勳府都事, 李自海爲成均館典籍.

58) 『宣祖實錄』 宣祖 37年(1604) 8月 25日 癸卯: 諫院啓曰, “尙州, 嶺南巨邑, 經亂之後, 蕩敗無形, 加以守宰數遞, 已爲棄邑. 若非其人, 難以收拾, 新牧使朴浚, 爲人凡庸, 蘇殘起弊, 決不可堪任. 請命遞差.” 答曰, “依啓.”

59) 『四留齋集』 卷之八 行年日記上: 二十五日. 得船四隻, 載送老親及妻累于江華. 蓋以興起義兵, 則家眷不可自隨, 而自分一死以報國, 爲此齟齬之舉. 意以此別爲永訣. 佇立津頭, 黯然銷魂, 只與濬兒, 還到相約之地, 則日已夕矣. 慕義之士, 皆已散去, 惟金德誠·趙庭堅輩數人留待. 近居甲士趙信玉父子來見. 與趙宗男等屢討零賊者也. 夕投宿于進士朴俊家. 蘇松明炊飯以饋.

60) 『塘村集』 卷之五 行狀, <贈嘉善大夫·漢城府右尹·行通訓大夫·平昌郡守高公行狀>: 次適武科朴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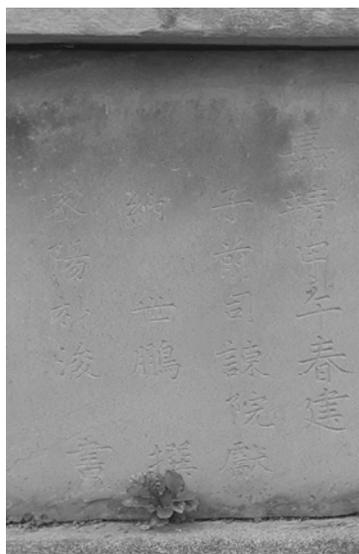
61) 『宣祖實錄』 宣祖 38年(1605) 2月 25日 己巳: 憲府啓曰, “(……) 長湍[湍]府使朴俊, 年紀衰耗, 政委下吏, 加以汎濫無忌, 徵斂太甚. 畿甸殘破之地, 不可任其侵漁, 請命罷職 (……).” 答曰, “允.”

俊/浚과 같은 착중 현상은 周博/周博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 『조선왕조실록』만이 아니라 『무릉잡고』에서조차 周博은 周博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러한 착중 현상은 『밀주지리인물문한지』와 『밀주지』에서도 발견되는데, 같은 항목의 기록에서도 朴浚과 朴俊이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정암의 사위 ‘朴俊’과 여러 지역의 군수를 지낸 ‘朴浚’은 동일인이라 할 수 있다.

서 ‘진사 박준’은 ‘반남 박준’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과 출신인 ‘진사 박준’도 이조판서에 제수되거나 추증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두 ‘박준’, 곧 ‘반남 박준’과 ‘진사 박준’은 李滉의 <서어부가후>에 등장하는 ‘密陽 朴浚’이 아님이 분명하다. ‘밀양 박준’은 1545년 무렵에 <어부가>(장가, 12章)와 <雙花店>이 포함된 악서를 간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어부가후>가 씌어진 1549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에 이조판서와 같은 높은 관직을 지낸 인물이거나 현직에 있는 인물이었다면, 이황이 ‘밀양 박준’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도원의 고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밀양 박준’은 누구일까?

앞서 <유청량산록>은 鄉會의 풍경은 물론, 그 속에 전승되는 음악이 국민의 음악과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아울러 보여주었다. 향회는 제례 뿐 아니라 회·연례와도 관계가 있다. 특히 연례에는 주로 속악이 연행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악공과 여기는 물론, 향촌 제생들도 향회에서 연행되고 향유되는 음악을 배웠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향회의 공간에서 연행되는 음악은 향교나 서원의 의례가 그러하듯이 지역에 따라 다른 음악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고, 따라서 ‘밀양 박준’의 악서는 비단 특정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상당 규모의 향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두루 유통할 목적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지역 가운데 풍기를 비롯한 경상북도 중북부 지역보다 앞서 문묘를 비롯한 시설과 학교 시설이 마련되고 향회가 활성화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낙동강 하류 지역 곧 밀양, 함안, 합천, 창녕 등지의 경상도 남부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밀양 박준’의 악서가 경상도 남부 지역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무렵에 ‘밀양 박준’이 간행한 악서를 주세붕이 가지고 있었고, 황준량이 그 속에서 <어부가>를 취해서 이현보에게 전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周文甫墓石의 右트머리. “嘉定甲午春建 / 子前司諫院獻納世鵬撰 / 密陽朴浚書”라고 새겨져 있다.

이렇게 ‘밀양 박준’의 악서에 포함된 <어부가> 장가가 이현보의 손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에 주세붕이 있었다면, 주세붕이 남긴 문헌에 ‘밀양 박준’이 등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안타깝게도 주세붕의 시문을 망라한 『愼齋全書』에서도 ‘밀양 박준’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주세붕이 ‘밀양 박준’이란 인물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周文甫(1467~1532) 묘석에 새겨진 묘지명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주세붕이 쓴 아버지 묘지명의 글씨를 쓴 인물이 바로 ‘密陽 朴浚’인 것이다.⁶²⁾

이 묘석 전면에 새겨진 글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맨 오른쪽에는 주세붕 어머니(昌原黃氏)의 墓誌, 왼쪽에는 주세붕 아버지 묘지명이 각각 새겨져 있다([그림 3] 참조).⁶³⁾ 그 사이에 “嘉靖己酉五月 贈 / 嘉善大夫 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라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 ‘가선대부이조참판겸

62) 이 사실은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誌』, 密陽文化院, 1987, 232쪽에
 63) 연보에는 1550년 “어머니 묘갈을 세웠다(立考妣墓碣).”라는 기사 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놓았다. “先生撰先公墓文. 營立墓碣, 伐石水運, 至上浦舟沈. 先生臨江痛泣, 盥手祈天. 翌日, 舟忽載石而浮. 又以誰無父母孰非人子八字, 刻于石望柱. 壬辰之亂, 島夷疑其有貨, 欲加暴, 見石刻字, 感歎曰, ‘此孝子之葬親也. 寧忍犯爲?’ 遂引去.” 이 글 때문에 주문보 묘지명 또한 1550년에 지어 새긴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어머니 묘갈을 세울 때 아버지 묘석과 묘지명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했을 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는 분명하게 1534년(가정(嘉靖) 갑오(甲午))에 묘석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지의금부사'는 1549년에 추증된 주문보의 관직이다. 이때 1538년에 작고하여 남편과 합장된 주세붕 어머니 또한 '貞夫人'에 추증되었다. 그 사실이 적시된 주세붕 어머니 墓誌는 양아들 주박이 永川郡守兼春秋館編修官을 지낼 때 지었다. 그때가 1579년~1583년 사이였다.⁶⁴⁾ 이렇듯, 오른쪽 창원황씨 묘지가 빨라도 1579년에서 1583년 무렵에 새겨넣은 것이라면, 중간에 새겨진 주문보 증직 사실을 서술한 墓文은 1550년에 새겨진 것이다. 연보에 의하면, 주세붕은 1549년에 아버지 墓文과 어머니 哀誌를 짓고 1550년에 부모의 墓礎를 세웠기 때문이다.⁶⁵⁾



주문보 묘지명(주세붕) 주문보 묘문(주세붕) 창원황씨 묘지(주박)

[그림 3] 주문보·창원황씨 묘석 글씨

이와 달리, [그림 2]의 묘지명이 새겨진 묘석은 1534년에 세웠고 묘지

64) 정재진 편역, 『益陽志 國譯』, 영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3, 부록 『益陽志(天)』 卷一, 18張: 郡守周博(博). 文科. 己卯十二月來, 癸未十月棄去.

65) 『武陵雜稿』 附錄 卷之二 年譜, 二十九年(明宗五年)庚戌(先生五十六歲): 七月, 入爲同知中樞府事. 俄遷成均館大司成. (……) 立考妣墓礎. 先生撰先公墓文. 營立墓礎, 伐石水運, 至上浦舟沈, 先生臨江痛泣, 盥手祈天. 翌日, 舟忽載石而浮. 又以誰無父母孰非人子八字, 刻于石望柱. 壬辰之亂, 島夷疑其有貨, 欲加暴, 見石刻字, 感歎曰. “此孝子之葬親也. 寧忍犯爲?” 遂引去. 이때 지은 아버지 묘문은 인용한 사실이 전부이고, 어머니 묘문은 『武陵雜稿』 卷之七 別集 墓誌碣에 실린 <先妣貞夫人諱辰哀誌>이다. 어머니 묘문을 1549년 10월에 지은 만큼, 아버지 묘문도 묘갈을 세우기 전해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석망주(石望柱)에 “누군들 부모가 없으며, 누군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誰無父母, 孰非人子)”를 새긴 것도 1550년이었다.

명⁶⁶)은 주세붕이 1533년에 지었고, 묘석도 그 무렵에 세웠다.⁶⁷) 당시 주세붕은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司諫院獻納에서 물러났고, 마침 아버지가 위독하여 威安에 귀향해 머물고 있었다. 그 사이 지방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사간원헌납’ 앞에 ‘前’이 붙은 것이다.

‘밀양 박준’은 주세붕이 지은 주문보 묘지명을 묘석에 새겨넣기 위해 楷書體의 글씨로 썼다.⁶⁸) 이 과정에서 [그림 2] 부분의 내용이 보태졌다. 즉, 1533년에 지은 묘지명을 1534년에 묘석에 새기는 과정에서 “嘉靖甲午春建 / 子前司諫院獻納 世鵬 撰 / 密陽朴浚 書”라는 말이 보태진 것이다.

이처럼 ‘밀양 박준’은 해서체의 글씨를 잘 쓴 인물로서 1533년 혹은 1534년에 주문보 묘지명 글씨를 쓴 인물로 등장한다. 묘석 글씨는 서예에 능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다. 주문보를 알아야 하고 특히 아들 주세붕과는 친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이보다 10년 전쯤인 1524년에 밀양 출신 李迨(1483~1536)라는 인물이 <梁伯隆墓碣銘>를 짓고 글씨를 썼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이태는 김안국의 문인으로 1507년에 문과에 급제했고, 이현보·金正國(1485~1541)·權檉(1478~1548) 등과 교유했는데, 서예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1512년 奉敎로 재직할 때 병을 稱託하고는 娼妓를 데리고 家鄉 밀양으로 내려온 일로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했으며, 기묘사화를 계기로 귀향해서는 학문만 전

66) 『武陵雜稿』 卷之八〇原集 墓誌碣, <先考禦侮將軍行副司果府君墓銘>.

67) 『武陵雜稿』 附錄 卷之二 年譜, 十二年(中宗二十八年)癸巳(先生三十九歲): 二月, 葬參判公于縣西上浦猪淵之原. 先生親自負土成墳, 盡家財環築石屏. 人或言過於厚葬, 先生曰, “爲人子者, 可惜財以薄其親乎?” 葬畢, 廬于墓下. 距家幾二十里. 每三日, 一省母夫人, 三年不懈. / 撰參判公墓表.

68) 이 사실은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誌』, 密陽文化院, 1987, 231~232쪽에서 다음과 같이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 “朴浚은 글씨도 잘 썼다. 現在 柒原의 愼齋 周世鵬의 親山의 墓銘은 그의 筆蹟으로 남아 있다.” 박순문, 앞의 글, 49쪽에서는 박준의 이름이 새겨진 묘석 사진이 처음 소개되었다.

넘하고자 했다. 1532년 다시 관직에 나아가기까지 10여 년 동안 밀양에 거주했다. 그 사이에 梁汝昌(1434~1522) 묘갈명과 묘석 글씨를 썼다.⁶⁹⁾ 이태는 양여창의 아들 梁澹과 同鄉의 知己이자 同榜이었다. 그런 인연으로 묘갈명을 짓고 글씨까지 쓴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밀양 박준’이 주세붕과 매우 가까운 친분이 있던 인물이었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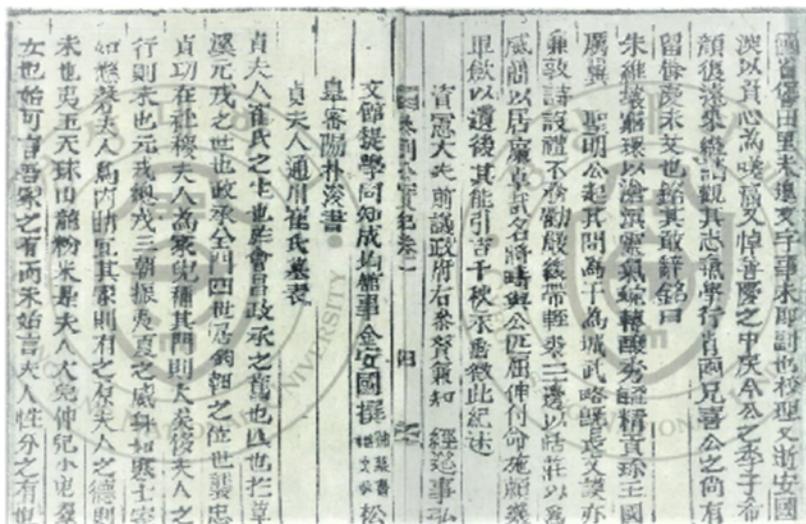
한편, 이태는 자기 관직을 분명하게 밝혀 묘석 글씨를 썼다. 그에 비해, [그림 2]에서와 같이 ‘밀양 박준’은 아무 관직도 附記하지 않았다. 묘지명을 짓은 인물은 물론, 글씨를 쓴 인물이 관직에 있을 때는 관직명을 밝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주문보 묘지명 글씨를 쓸 당시 ‘밀양 박준’은 아무 관직에도 있지 않았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출사한 인물일까? 이에 대한 답도 부정적이다. 또 다른 비명에서도 ‘밀양 박준’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관직 이름을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밀양 박준’은 주문보 묘지명 글씨뿐 아니라, [그림 4]에서와 같이 李允儉(1451~1520)의 <神道碑銘>⁷⁰⁾ 글씨도 썼다. 해당 비명은 金安國(1478~1543)의 문집에는 ‘墓碣銘’으로 분류되어 있다.⁷¹⁾ <신도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초에 이 비명이 묘갈명으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윤겸은 둘째 아들 李希閔(1498~1520)과 함께 조광조가 희생되는 기묘사화(1519)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는데, 그 이듬해에 작고했다. 아버지가 작고하자 金正國과 친밀했던 이희민이 그의 형 金安國에게 묘갈명을 부탁했다. 그 사이에 이희민이 죽었고 아우 李希顔(1504~1559)이 다시 부탁했다. 金安國은 이희민이 부탁했을 때 진작 들어주지 못한 일을 못내 아쉬워하며 묘갈명을 지어주었다. <신도비명>에 밝혀 놓은 金安國의 관직에 ‘前’이란 말이 붙어있는데, 이는 해당 관직에서 물러나 田里에서

69) 『月淵先生文集』 卷之一 碑銘, <梁伯隆墓碣銘竝序>: 嘉靖三年甲申二月二十二日.

70) 『陝川李氏世稿』, 參判公實紀 卷之一, <神道碑銘>: 資憲大夫前議政府右參贊兼知經筵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 金安國撰 / 松臯密陽朴浚書.

71) 『慕齋先生集』 卷之十三 墓碣銘, <嘉善大夫忠清道兵馬節度使李公墓碣銘>.



[그림 4] 이윤겸 신도비명 부분. “資憲大夫前議政府右參贊兼知 經筵事 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安國撰(號慕齋諡文敬)松 / 臯密陽 朴浚書”라고 써여 있다. (남명학교전문헌시스템)

생활하던 시기에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다.⁷²⁾ 김안국은 1521년에 上護軍 兼同知成均館事로 관직에 다시 나아갔다. 따라서 이윤겸 묘갈명은 1520년에서 1521년 사이에 지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김안국이 지은 묘갈명의 제목이 『陝川李氏世稿』에는 신도비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보에 의하면, [그림 4]의 이윤겸 신도비는 1546년 3월에 세워졌다. 이때에 묘갈명이 신도비명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밀양 박준’이 글씨를 써서 신도비에 새긴 것이다.

이 신도비명의 ‘밀양 박준’에도 관직 이름은 부기되지 않았다. 이는 1534년에 주문보 묘지명 글씨를 쓸 때는 물론이고 1546년 이윤겸 신도

72) 행장에 의하면, 김안국은 기묘사화에서 큰 화는 모면했지만, 해당 시기에 해당 관직에서 물러나서 주로 利川注村에서 생활했다.

비명 글씨를 쓸 때도 ‘밀양 박준’이 관직에 있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물론 이윤검 신도비명에는 [그림 4]에서와 같이 ‘밀양 박준’이란 이름 앞에 ‘松皐’라는 호가 덧붙었다. 하지만 10여 년 시차가 있는 데도 관직은 없고 관향만 밝혀 놓았을 뿐이다.⁷³⁾ ‘밀양 박준’은 김정국의 <己卯黨籍>이나 安瑠의 <己卯錄補遺>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己卯士禍에 연루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⁷⁴⁾ 분명한 것은, 이 ‘밀양 박준’이 주세붕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출사는 하지 않고, 1534년에서 1546년 사이에 함안, 합천 등지에서 향촌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이 ‘밀양 박준’이 <서어부가후>의 ‘밀양 박준’과 동일인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서어부가후>의 ‘밀양 박준’ 또한 1549년까지 출사하지 않은 인물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세붕과의 관계는 이 ‘밀양 박준’이 향촌 사회에 급증하는 음약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악과 속악을 모은 악서를 편집, 간행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밀양 박준’은 풍기군수 시절 주세붕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학생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학생들 가운데는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하기도 하고 출사하지 않고 鄉人으로 일생을 보낸 인물도 있었다. 출사 여부를 떠나 그들 사이 유대관계는 지속했다고 볼 수 있다. 주세붕은 咸安郡의 수재로 중앙 관직에 진출했지만, 해

73) 주세붕 아버지 묘지명만이 아니라 묘석에 새긴 묘문 글씨까지 ‘밀양 박준’이 썼다면 ‘밀양 박준’은 1550년까지 생존했고, 어머니 애지 글씨까지 썼다면 1580년 무렵까지 생존했을 것이다. 하지만 묘석 글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74) 물론 무오사화나 갑자사화 때 形跡을 감추고 생활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나 1545년 이후에 문과나 무과를 통해 출사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乙巳士禍(1545) 직전까지 기묘사화에 화를 입은 상당수의 지역 인사들이 大尹 편에 가담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회에서 상당수가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 ‘이조판서’에까지 오를 수는 없는 이치다. 따라서 유도원이 고증한 ‘이조판서 박준’은 주세붕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밀양 박준’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당 지역의 서생들과의 유대관계는 지속하고 있었을 것이다. ‘밀양 박준’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면, ‘밀양 박준’은 주세붕과 엇비슷한 또래였을 것이다. ‘밀양 박준’이 주문보 묘지명 글씨를 쓴 1534년에 주세붕은 41세였다. 앞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어부가후>의 ‘밀양 박준’이 악서를 편찬한 시기는 1544년 혹은 1545년 무렵이다. 이때 주세붕의 나이는 51세 혹은 52세였다. 따라서 ‘밀양 박준’이 아악과 속악을 모아 한 부의 책으로 만들어서 간행한 시기도 50대에 접어들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밀양 박준’이 이윤겸 신도비명 글씨를 쓰게 된 계기는 주문보 묘지명 글씨를 쓴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주문보 집안은 이윤겸 집안과 함께 모두 합천이 세거지였다. 함안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주문보는 물론 주세붕도 그 집안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세붕도 합천에서 태어났다. 주문보가 외가가 있는 함안(權虞의 家鄉 가운데 하나, 다른 하나는 安東)으로 이사하면서 주세붕은 상주 주씨 함안(漆原) 入鄉朝가 되었다. 낙동강 연안의 합천-함안-밀양 지역 출신 사족들이 연속되는 사회에서 상당한 화를 입었다. 죽임을 당하거나 삭탈관직이 되거나 가산이籍沒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노비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이 지역 사족들이 향촌 사회는 물론 국가사회의 혁신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무오·갑자사화에 희생된 인물들이 中宗代(1506~1544)에 신원이 되기도 했지만, 연속되는 사회를 계기로 출사를 단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기묘사화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특히 기묘사화 때에는 사회의 조짐이 감지되면서 해당 지역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관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관직에 제수되어도 부임하지 않았다. 이윤겸은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주문보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문보가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던 것이나 주세붕에게 ‘愼’을 특히 경계한 것도 이러한 정치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밀양 박준’이 주문보 묘지명 글씨를 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그의 집안 또한 주문보 집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법하다. 주문보 집안은 주세붕의 형이자 양아들 주박의 아버지 周世鵬(1491~1524)이 무오·갑자사화에 거둬 희생된 朴漢柱(1459~1504)의 사위가 되면서 두 집안 사이에 인척 관계가 형성되었다. 박한주는 김종직의 문인으로 향촌 사회의 문화 풍토를 쇄신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다. 柳希春(1513~1577)이 湖南 學問 淵源이 모두 박한주에서 나왔다고 평가했을 정도로⁷⁵⁾畿湖以南 향촌 사회 문화 풍토 쇄신 운동에서 박한주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주세곤은 박한주가 매우 촉망하는 인물이었다. 사위로 맞은 것은 그 때문이다.⁷⁶⁾ ‘밀양 박준’이 주문보 묘지명 글씨를 쓴 것이나 이운검 신도비명 글씨를 쓴 데에는 주세붕 못지않게 그의 형 주세곤과의 관계가 두터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주세붕은 아버지와 함께 함안으로 이주했지만, 주세곤은 합천 세거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불행히도 주세곤은 일찍 죽었고, 따라서 형과의 관계가 동생과의 관계로 이어졌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세붕, 주세곤 형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밀양 박준’은 박한주 집안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

박한주는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입고, 갑자사화에 죽임을 당했다. 그의 후손 가계는 족보에 매우 소략하게 기록되었을 뿐인데, 무엇보다 甲子士禍(1504) 때에 온 가족이 희생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⁷⁷⁾ 물론 중종반정(1506) 이후에 박한주는 신원이 되었다.⁷⁸⁾ 하지만 ‘殘邑奴婢’

75) 『承政院日記』 英祖 2年(1726) 3月 17日: 故名臣柳希春, 嘗稱漢柱曰, “湖南學問淵源, 皆出於先生.” 此表章道學之功也. 於此可見其學術之正, 直節之卓矣.

76) 주박은 박한주의 외손이다. 그래서 朴漢柱의 行狀도 주박이 지었다(『通訓大夫前行弘文館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記注官 漆原周傳謹狀』). 괄호 안의 기술에서 이름 앞에 貫鄉 ‘尙州’가 아닌, 家鄉 ‘漆原’을 밝힌 점이 흥미롭다. ‘密陽 朴浚’의 密陽도 朴浚의 家鄉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77) 『燕山君日記』 燕山君 10年 甲子(1504) 5月 13日(壬寅): 傳曰, “朴漢柱子等, 年滿者決罪, 殘邑爲奴, 年未滿者, 亦定殘邑爲奴, 俟其年長決罪.”

78) 1629년(인조 7년)에 함안에는 ‘咸安朴漢柱閭表碑’가 세워지기도 하는데, 이는 박한주가 함안 향촌 사족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되었음을 말해 준다.

가 되었던 자녀들 상당수는 그 종적을 드러내고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박한주는 密陽府北面 豐角縣에서 나서 자랐다.⁷⁹⁾ 그런 점에서 ‘밀양 박준’은 박한주 집안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밀주구지』의 다음 기록이 실상과 부합할 수 있다.

風流洞. 別座 閔九疇이 살았던 곳. (漁父辭跋에 “옛날 朴俊이란 이가 衆音을 안다고 이름이 알려졌는데 東方의 樂을 이어 雅든 俗이든 모오지 않음이 없이 1부 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간행했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곧 이 마을 사람이다.)⁸⁰⁾

박준의 ‘준’ 자가 달리 표기되기도 했지만, 이 기록을 만든 사람은 <서어부가후>의 ‘밀양 박준’이 밀양의 풍류동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높은 관직에 오르지 않았기에 관직은 밝히지 않고 “이 마을 사람”이라고만 했다. 물론 이 기록이 1932년에 편찬된 『密州志』에 발췌 인용되기도 했지만,⁸¹⁾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인용문은 일찍이 학계에 소개되었고, <서어부가후>의 ‘밀양 박준’이 곧 밀양 풍류동 사람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다.⁸²⁾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 정보

79) 『龜峯集』 卷之一, <有明朝鮮國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行朝奉大夫司諫院獻納兼春秋館記注官迂拙齋朴先生行狀>(周傳): 天順己卯正月二十三日丙午戌時, 公生于府北豐角縣車山村.

80) 『密州舊誌』(戊戌重陽獲麟): 風流洞別座閔九疇所居. 漁父辭跋云, 古有朴俊者, 名知衆音, 凡係東方之樂, 或雅或俗, 靡不哀集, 爲一部書, 刊行于世云. 乃此村人也. 『鄉土史料集』 1, 密陽文化院, 1986, 146쪽. 筆寫本(影印). 지금까지 관련 기록 가운데 ‘閔九疇’의 이름을 밝혀 놓은 것은, 이 자료뿐이다. 『密州誌』, 『密州地理人物文翰誌』, 『密州徵信錄』 등의 표제로 전하는 것(필사본, 활자본) 중에 풍류동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문헌에서 閔九疇라는 이름을 다 밝혀 놓은 것은 이 자료가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이 필사본이 가장 오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81) 『密州誌』 卷之一, 三十七: 風流洞. 未詳. 古朴俊, 知音律, 凡東方之樂, 或雅或俗, 哀集爲一部書, 刊行于世. 朴秀憲, 『密州誌』, 密陽: 密陽郡鄉校, 1932.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82) “風流洞은 現在의 行政區域으로 密陽郡 府北面의 境內에 있으며 佔畢齋 金宗直 先生의 고장인 池洞의 바로 이웃 마을이다. 『風流洞』이란 洞名도 朴俊으로 因해

인 양 밝혀 놓음으로 인해서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록이 아무 근거 없이 제시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문헌은 肅宗代(1674~1720)에 편찬되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유도원의 고증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주문보 묘지명과 이윤검 신도비명의 묘석 글씨까지 썼는데도 ‘밀양 박준’은 『咸安郡誌』, 『陝川郡誌』는 물론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鄉案 등에서 그 종적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 점은 ‘밀양 박준’의 주요 활동 무대가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⁸³⁾ 또한, 풍류동 사람인데도 밀양의 인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밀주지』 등에는 밀양 출신으로 서예와 음악에 조예가 깊어 명성을 드날린 인물은, 출사한 인물일 경우에 ‘인물’ 항목에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해, ‘밀양 박준’은 ‘風流洞. 別座 閔九疇가 살았던 곳’의 註釋에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마을 사람’이라는 말은 풍류동에서 태어났다는 말일 뿐, 그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밀양 박준’이 풍류동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성장 이후 주요 활동 무대는 밀양이 아니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밀양 풍류동 사람이라는 것과 “양주에서 살았다”라고 한 유도원의 고증이 이 부분에서는 양립할 수도 있다. 향촌 사족을 중심으로 한양과 향촌 사회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양주에 거주하면서 비명 글씨를 써 줄 수도, 직접 함안과 함천 지역을 방문하여 비명 글씨를 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였든 간에 ‘밀양 박준’이 주세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안-함천을 연결하는 경상도 남부 지역의 향촌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했다는 점만을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서 생긴 것이라 생각할 때 더욱 흥미가 있다.”(李佑成, 앞의 논문, 22쪽)라고 했는데, 풍류동이란 지명이 朴浚 때문에 생겼다는 말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다. 참고로 밀양에는 신라 때부터 風流峴이란 지명도 있었다.

83) 물론 현재까지 전하는 향안은 대개 임진왜란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이전의 인물은 追記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주세붕과 주박, 이윤검과 이희안 등은 모두 향안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4. 밀양 박준의 악서와 『악장가사』의 관계

『악장가사』는 ‘아악가사’와 ‘속악가사’ 부분이 이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사’ 부분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樂學便考』는 조정의 음악이 ‘雅樂章’·‘俗樂章’·‘歌詞’의 3부로 편성되기도 했음을 보여주는데, 『악장가사』도 같은 체제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악학편고』의 3부 모두 중국의 음악에서부터 ‘我朝’ 곧 朝鮮 음악 순으로 배열했는데, 『악장가사』는 중국 음악은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雅樂章이나 俗樂章 가운데는 노랫말은 한시라도 그 바탕이 되는 음악은 중국 고유한 음악이 아닌 것도 있다. 음악과 노랫말의 결합에 의한 악장 제작이 ‘我朝’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我朝樂章’으로 분류한 듯하다. 그런 기준에 의하면, 『악장가사』는 雅樂이든 俗樂이든 ‘東方樂의 樂章과 歌詞’만을 수록한 문헌이다. 우선 이 점이, <서어부가후>에서 “東方의 樂을 이어 雅든 俗이든 모두 모아” 만든 ‘밀양 박준’의 악서와 『악장가사』가 그 체재나 구성에서 흡사했으리라는 짐작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 『악장가사』 ‘가사’ 레퍼토리의 『악학편고』 수록 양상

가사	악학편고	가사	악학편고
與民樂	俗樂章	思母曲	俗樂章
步虛子	俗樂章	楞嚴讚	-
感君恩	歌詞	靈山會上	俗樂章
鄭石歌	俗樂章	雙花店	俗樂章
靑山別曲	俗樂章	履霜曲	俗樂章
西京別曲	俗樂章	가시리	俗樂章
儒林歌	俗樂章	漁父歌	俗樂章
新都歌	俗樂章	滿殿春	俗樂章
風入松	俗樂章	華山別曲	俗樂章
夜深詞	俗樂章	五倫歌	俗樂章
翰林別曲	俗樂章	宴兄弟曲	俗樂章
處容歌	俗樂章	霜臺別曲	俗樂章

물론 『악학편고』의 편찬자가 참고한 악서는 ‘東方의 樂’에 국한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우선, [표 2]에서와 같이 <楞嚴讚>을 제외하면 현전 『악장가사』 ‘가사’에 수록된 레퍼토리는 『악학편고』에 수록되어 있으며, 배열 순서는 물론, 세부 분류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악장가사』에서는 모든 레퍼토리가 ‘歌詞’ 항목으로 분류된 데 비해, 『악학편고』에서는 <感君恩>만 ‘歌詞’, 나머지는 모두 ‘俗樂章’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俗樂章’ 중에 ‘我朝俗樂章’으로 분류된 宗廟永寧殿, 獻仙桃, 五羊仙, 壽延長, 三臺詞, 兩行花叢詞, 拋毬詞, 蓮花臺, 鳳來儀, 與民樂, 新都歌, 滿殿春, 華山別曲, 漁父歌, 五倫歌, 宴兄弟曲, 霜臺別曲 등이 모두 樂院에서 간행한 것⁸⁴⁾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唐樂-俗樂’ 레퍼토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악장가사』의 ‘가사’가 첫 부분에 ‘歌詞上’만 있을 뿐 끝부분에 ‘歌詞終’ 같은 말이 없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악장가사』의 저본이 樂院에서 편찬하는 악서였다면 ‘아악장’, ‘속악장’은 물론 ‘가사’ 항목에도 ‘당악-속악’의 레퍼토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현전 『악장가사』의 ‘歌詞上’ 뒤에 <獻仙桃> 등 ‘당악-속악’의 레퍼토리로 구성된 ‘歌詞下’가 이어졌으리라는 것이다. ‘당악-속악’은 ‘東方의 樂’이 아니다. ‘밀양 박준’은 雅든 俗이든 ‘동방의 악’을 모았다고 했다. 이렇게 ‘동방의 악’만을 모아 책으로 만들 목적이었다면, 악원에서 편찬, 간행한 諺釋 印本 가운데서 ‘歌詞下’는 배제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또한 ‘밀양 박준’이 현전 『악장가사』의 저본이 되는 印本에서 ‘동방의 악’에 해당하는 ‘아악장’·‘속악장’·‘가사’ 부분만을 모아서 한 부의 책을 만들어 간행했으리라는 짐작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악장가사』의 ‘歌詞下’가 『時用鄉樂譜』에 다수 수록된 巫歌系 레퍼토리로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16세기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時用鄉樂譜』에 포함

84) 自宗廟樂章至此, 皆樂院所刊行者.

된 레퍼토리 상당수가 『악장가사』는 물론, 『악학편고』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에 <城隍飯>을 비롯한 무가계 레퍼토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현전 『악장가사』의 ‘가사’와 비교할 때 공통 레퍼토리는 10편 남짓이다. 그런데 주로 제례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가계 레퍼토리들은 宮中에 소속된 악공은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지만 朝廷에 소속된 모든 악공이 익혀야 하는 음악은 아니었던 듯하다. 城隍飯과 內堂 등에서 수행하는 의례가 조정에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의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용향악보』가 『악장가사』 저본과는 간행 목적 및 용도가 사뭇 달랐음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가사하’가 무가계 레퍼토리로 편성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다.

[표 3] 『시용향악보』 레퍼토리의 『악장가사』·『악학편고』 수록 여부

시용향악보	악장가사	악학편고	비고
納氏歌	○	○	靑山別曲
儒林歌	○	○	
橫殺門	-	-	紫霞洞
思母曲	○	○	俗稱 엇노리
西京別曲	○	○	隆化
雙花曲	雙花店	雙花店	俗稱 雙花店
儼禮歌	-	-	鄭瓜亭
鄭石歌	○	○	
靑山別曲	○	○	
維鳩曲	-	-	俗稱 비두로기
歸乎曲	가시리	嘉時理	俗稱 가시리
笙歌寥亮	-	-	
相杵歌	-	-	
시용향악보	악장가사	악학편고	비고
風入松	○	○	
夜深詞	○	○	
城隍飯	-	-	
內堂	-	-	
大王飯	-	-	
雜處容	-	-	
三城大王	-	-	

軍馬大王	-	-	
大國一	-	-	
大國二	-	-	
大國三	-	-	
九天	-	-	
別大王	-	-	

저본의 편찬 시기와 관련하여, [표 3]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현전 『악장가사』에도 수록된 <思母曲>, <雙花曲>, <維鳩曲>, <歸乎曲> 등이 『시용향악보』에서는 ‘俗稱’으로 밝혀 놓았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시용향악보』와 『악장가사』 저본이 모두 악원에서 간행한 것이라 해도, 전자와 달리 후자는 조정과 긴밀하게 연쇄되어있는 鄉黨에까지 두루 배포할 목적에서 편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자와 같은 악서는 조선시대에도 조정에서 주관하여 편찬하고 간행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하도록 했다. 그 점은 世祖 14년(1466)에 慶尙道·全羅道·忠淸道·江原道에 樂書를 나누어 보내서 간행하도록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⁸⁵⁾ 악서 편찬은 조정에서 하되 간행은 지방에서도 하게 한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조정에서 정한 음악 레퍼토리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1466년 지방에서의 간행은 世祖代(1455~1468)에 각종 의례에 쓰는 음악을 새로 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비록 英祖代(1724~1776)에 重刊(1759)된 것이지만, 세조대에 정한 음악을 망라한 악서가 곧 『大樂後譜』이다. 世宗代(1418~1449)에 정한 음악(『대악전보』⁸⁶⁾)에 비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악서를 편찬했고, 새로 정하는 음악이 비단 조정만이 아니라 鄉黨에서도 익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간

85) 『世祖實錄』 世祖 14年(1468) 4月 28日 丁巳: 命分送樂書于慶尙·全羅·忠淸·江原道, 開刊.

86) 『대악후보』가 편찬되면서 세종대에 편찬된 악서는 『대악전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대악전보』에 수록된 음악 레퍼토리는 『增補文獻備考』에 실려 있는데, 둘을 비교해 보면 『대악후보』와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張師勛, 『大樂後譜解題』, 國立國樂院傳統藝術振興會 편, 『大樂後譜(全)』, 銀河出版社, 1989, 5-11쪽 참조.

행하도록 한 것이다.

조정 음악 레퍼토리의 변화는 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한때는 조정에서 정한 음악이었으나 鄉黨의 음악으로만 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궁중의 음악으로 전하기도 하고 조정의 음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표 3]은 세조대 이후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思母曲>, <雙花曲>, <維鳩曲>, <歸乎曲>이 속칭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 레퍼토리가 『시용향악보』 편찬 당시에는 궁중의 음악이었으나 그 이전 시기에 <엇노리>, <쌍화점>, <비두로기>, <귀호곡> 등의 이름을 갖고 향당의 음악으로 전해졌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大樂後譜』에 ‘雙花店’이란 이름만 갖고 있던 <雙花曲>이 『조선왕조실록』 성종 21년(1490)의 기사에는 ‘雙花曲’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⁷⁾ 어명에 따라 <쌍화점>을 산개하면서 갖게 된 이름이 <쌍화곡>이기 때문이다. <쌍화점>은 산개 이전에 조정 음악이었던 만큼 향당의 음악으로도 전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쌍화곡>으로 산개되어 조정이나 궁중의 음악으로 연행·전승될 때에는 ‘쌍화곡’이라 불렀겠지만 향당에서는 ‘쌍화점’이란 이름을 가진 음악으로도 전승되었을 것이다. 속칭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용향악보』는 <쌍화점>이 <쌍화곡>으로 산개된 이후에 편찬된 악서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시용향악보』와는 달리 『악장가사』에는 성종대에 산개한 <쌍화곡>이 아니라 <쌍화점>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악장가사』 ‘가사’ 부분이 산개 이전의 조정 음악을 반영하여 편찬한 악서이거나, 산개 이후 향당의 음악으로만 전하던 <처용가>가

87) 『成宗實錄』 成宗 21年 5月 21日 壬申: 先是, 命西河君任元濬·武靈君柳子光·判尹魚世謙·大司成成倪, 刪改雙花曲履霜曲北殿歌中淫褻之辭. 至是, 元濬等撰進傳曰, “令掌樂院, 肄習.”

다시 조정 음악 레퍼토리로 정해진 이후에 편찬한 악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처용가>이다. <처용가>는 세종대에 남자 예능인들이 연행하는 呈才⁸⁸⁾로서 宗廟·朝會·公宴의 음악으로 정한 것이다.⁸⁹⁾ 세종대에 이미 <鳳凰吟>으로 산개되었고, 따라서 『대악후보』에는 산개된 <봉황음>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악학궤범』에도 산개된 <봉황음>과 산개 이전의 <처용가>가 모두 포함되어 樂工과 女妓이 연행되도록 하고 있다. 처용 악무의 정비와 <처용가>의 <봉황음>으로의 산개는 모두 女調의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처용가>를 비롯한 鄉黨俚語로 만들어진 악장이 궁중과 조정의 음악으로 연행되면서 女調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그 때문에 성종대부터 朝會에서만은 鄉黨俚語의 노래는 가급적이면 부르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어명에 따라 편찬된 『악학궤범』에는 鄉黨俚語로 익히는 <처용가>를 ‘時用鄉樂’에 포함하고 있다. 그에 비해, 『시용향악보』에는 <봉황음>이나 <처용가>는 없고 <雜處容>만 있다. 연산군대에는 궁중에서 處容歌舞戲 연행이 매우 성행했다. 특히 연산군 10년에는 先代遺風이라는 이유를 들어 妓로 하여금 處容舞를 익혀 宴享에 쓰도록 했다.⁹⁰⁾ 물론 중종반정 이후부터 폐지하는 조치가 거듭 취해졌다. 하지만 ‘禳災處容’은 유지되었고, 중종 19년 이후 국왕은 “세밀마다 處容戲를 관람했다.”⁹¹⁾ <雜處容>이 ‘禳災處容’과 연관되어있는 것이라

88) 『世宗實錄』 世宗 25年(1443) 1月 25日 辛巳: 傳旨慣習都監, “今後處用[容]舞, 除女妓, 用男夫.”

89) 『世宗實錄』 世宗 31年(1449) 10月 3日 庚戌: 議政府據禮曹啓申, “宗廟·朝會·公宴之樂, 摛拾前朝雜聲, 深爲未便. 今新定諸樂及舊樂之內, 可用諸聲, 更加刪定. 發祥呈才十一聲·定大業呈才十五聲·保太平呈才十一聲·鳳來儀呈才五聲·外羊仙呈才六聲·拋毬樂呈才四聲·蓮花臺呈才四聲·處容呈才三聲·動動呈才一聲·無導呈才一聲·舞鼓呈才三聲·響鉞呈才一聲·祭樂初獻一聲·亞獻一聲·終獻一聲·與民樂漫一聲·致和平中二聲·眞勻四體四聲, 凡七十五聲, 常令隸習.”

90) 『燕山君日記』 燕山 10年(1504) 12月 13日 己巳: 傳曰, “處容舞前代遺風, 今所宜用, 令妓傳習, 一應宴享時行用.”

91) 김명준, 앞의 책, 157쪽.

면 『시용향악보』는 연산군 10년 이후에서 중종대 사이 궁중 음악으로 쓰인 향악의 악보로 편찬된 것이었을 수 있다.

[표 4] 『대악후보』 ‘時用鄉樂’ 레퍼토리의 『악학궤범』·『시용향악보』
·『악장가사』 수록 양상

대악 후보	악학 궤범	시용 향악보	악장 가사	비고
致和平	○	-	保太平	刪改論義
醉豐亨	○	-	定大業	刪改論義
鳳凰吟	鳳凰吟 處容歌	-	處容歌	在伴奏
眞勺	○	-	-	刪改論義
履霜曲	-	-	○	刪改
滿殿春	-	-	○	河清曲 [≒赫整]
納氏歌	-	○	○	臨雍曲
橫殺門	-	○	-	
感君恩	-	-	○	
西京別曲	-	○	○	[≒永觀]
慢大葉	-	-	-	
대악 후보	악학 궤범	시용 향악보	악장 가사	비고
感君恩	-	-	○	
翰林別曲	-	-	○	景運曲
西京別曲	-	○	○	[≒永觀]
雙花店	-	雙花曲	○	刪改
步虛子	○	-	○	宣化曲
靈山會上	○	-	○	
北殿	○	-	-	刪改
動動	○	-	-	
井邑	○	-	-	
紫霞洞	-	-	○	

[표 4]에서와 같이, 『시용향악보』와는 달리, 현행 『악장가사』에는 <봉황음>은 없고 <처용가>는 포함되어 있다. 『악학궤범』에 <처용가>가 포함되어 있고, 연산군대에서 중종대 사이에 處容歌舞戲가 궁중에서 연

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악장가사』 저본 또한 해당 시기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 『악장가사』에는 『악학궤범』에서 밝혀 놓은 ‘시용향악’에 鄕黨俚語로 연행하도록 하여 포함되어 있던 <動動>, <井邑>, <鄭瓜亭> 등은 모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甲子士禍(1504)에 희생된 李世佐(1445~1504)⁹²⁾는 조정의 음악을 鄕黨俚語로 익히는 일은 일체 禁하자고 건의했지만,⁹³⁾ 세 편은 모두 『악학궤범』에 실렸다. 그런데도 세 편이 『악장가사』에는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중 <동동>과 <정읍>은 종종 12년에서 13년 사이에 이루어진 악장 개편 과정에서 <新都歌>와 <五冠山>으로 대체되었다.⁹⁴⁾ 악곡을 바꾸지 않고 음절이 같아서 대체했다. 이때 本師讚·彌陀讚은 새로 지은 <中興樂詞>로 대체되고 “靈山會上佛菩薩”과 같이 구호만 있던 <靈山會

92) 이세좌는 戊午士禍(1498) 때에 金宗直과 그 門人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93) 『成宗實錄』 成宗 19年 8月 13日 甲辰: 御經筵 講訖, 特進官李世佐啓曰, “方今音樂率用男女相悅之詞, 如曲宴·觀射·行幸時, 則用之不妨, 御正殿·臨群臣時, 用此俚語, 於事體何如? 臣爲掌樂提調, 本不解音律, 然以所聞言之, 眞勻雖俚語, 乃忠臣戀主之詞, 用之不妨. 但間歌鄙俚之詞, 如後庭花·滿殿春之類亦多. 若致和平·保太平·定大業, 乃祖宗頌功德之詞, 固當歌之, 以褒揚聖德神功也. 今妓工狃於積習, 舍正樂而好淫樂, 甚爲未便. 一應俚語, 請皆勿習.” 上顧問左右, 領事李克培對曰, “此言是也. 但積習已久, 不可遽革, 令該曹商議以啓.” 上曰, “可.”

94) 『中宗實錄』 中宗 13年(1518) 4月 1日 己巳: 大提學南袞啓曰, “前者命臣, 改製樂章中語涉淫詞·釋教者, 臣與掌樂院提調及解音律樂師, 反覆商確, 如牙拍呈才動動詞, 語涉男女間淫詞, 代以新都歌, 蓋以音節同也. 新都歌, 乃我朝移都漢陽時, 鄭道傳所製也. 此曲非用文詞, 多用方言, 今未易曉, 土風亦當存之. 且節奏, 古則徐緩, 今則急促, 不可改也. 舞鼓呈才井邑詞, 代用五冠山, 亦以音律相叶也. 處容舞·靈山會相, 代以新製壽萬年詞, 本師讚·彌陀讚, 代以新製中興樂詞. 蓋此二曲, 皆涉異端, 亦命臣正之故, 不得已撰之, 此曲乃世祖朝所製. 靈山會相, 則只以靈山會相佛菩薩一語, 以至於成. 大抵處容舞, 本奇邪不正之樂, 故亦以此曲節之. 臣意若不以此舞, 呈於雜戲之中, 則此詞雖不製, 可也. 靈山會相代用新製壽萬年詞曰, ‘碧海仙人乘紫烟, 分曹呈舞繡簾前. 插花頭重回旋緩, 恭獻君王壽萬年.’ 本師讚·彌陀讚, 代用新製中興樂詞曰, ‘…….’” 傳曰, “所啓之言皆是. 處容舞等, 如所啓革之, 則可也. 但不正之舊習, 不特此也, 必多有之, 不可一切革之.” 仍命以袞所製樂章, 代舊樂章.

上>은 <萬年詞>로 대체되었다. 『악장가사』에는 <신도가>는 물론 이때 지어진 <萬年詞>가 <靈山會上>의 가사로 실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악장가사』 저본 중 ‘가사’의 저본이 악장 정비 작업이 이루어진 1517년~1518년 무렵 이후에 편찬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시기 음악 정비 작업은 南裒(1471~1527)이 주도했다. 그 작업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趙光祖(1482~1519)였지만, 음률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남곤이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악장이 새로 제작된 만큼 조정이나 향당에서 복무하는 악공들이 익힐 수 있도록 악서도 새로 편찬되었을 것이다. 음악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같은 음악의 음절에 맞는 노랫말을 고르거나 새로 지었을 뿐이므로, 樂譜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악장가사』 저본은 이 시기의 음악 정비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조광조는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金宏弼(1454~1504)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남곤은 김종직의 문인이었다. 1517년~1518년 사이에 음악 정비 사업이 추진될 때 매우 가까웠던 관계가 틀어진 내막은 소상하게 알 수 없지만, 이듬해 남곤 등이 주도한 己卯士禍(1519)에서 조광조는 희생되었다. 이후 남곤은 영의정에까지 올랐지만, 죽기 직전에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고 자신의 글을 모두 불태웠다고 전한다. 그리고 남곤은 사후인 1558년에는 彈劾을 받아 削奪官職되었다. 그런데도 그의 新製樂章의 하나인 <萬年詞>가 <영산회상>의 가사로 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악장가사』 저본이 인조대 이후에 복각되기 이전에도 향당에서 覆刻·印刊되었던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1519년 이후 1545년 사이에 『악장가사』와 같은 악서를 새로이 편찬할 만큼 악장을 산개하거나 새로 지은 흔적은 찾아지지 않는다.⁹⁵⁾ 그런 점에서

95) 安瑠의 후손으로 榮川(榮州)郡守를 지냈던 安瑠은 掌樂院僉正의 이력을 갖고 악사와 악공의 도움을 얻어 10여 년(1561~1572)에 걸쳐 『琴譜』(一名 琴合字譜)를 편찬했다. 이 악서에는 <思母曲>, <慢大葉>, <鄭石歌>, <翰林別曲>, <感君恩>, <與民樂>, <步虛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레퍼토리 중 <慢大葉>을 제

1545년 이전 복각·인간의 주체가 바로 ‘밀양 박준’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주문보 묘지명과 이윤검 신도비명 글씨를 쓴 ‘밀양 박준’과 『밀주구지』에 등장하는 ‘밀양 박준’은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남곤은 밀양에서 나서 자랐고, 따라서 밀양을 비롯한 함안, 함천 등지에서 활동했던 사족 출신 국인은 물론 향인과도 긴밀한 교유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⁹⁶⁾ 학문적으로는 김종직의 문인과 그 문인의 후손들로서 향촌 사회의 문화 풍토 쇄신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그 운동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악이었다. 음악 문화를 바꾸려 해도 음률을 이해하는 인물이 있어야 하고 조정의 음악으로 정해서 향당에서도 익히도록 한 음악을 정리한 악서가 있어야 한다. 밀양 출신 인물인 남곤이 음악 정비 사업을 주도하고 李迨가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는 사실은 다들 音律에 정통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음률에 정통할 수 있었던 데는 조정에서 정하는 음악이 향당의 음악으로도 전승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메커니즘이 가장 일찍부터 작동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상도 남부 지역이었다. 그런 지역이라면 南袞과 李迨처럼 음악과 文才에 두루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인물만이 아니라 ‘밀양 박준’처럼 음악과 書法에 두루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인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5. 결론

『악장가사』는 한국고시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온 문헌이다. 특정 문헌을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자면

외하면 모두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慢大葉>은 『大樂後譜』에 실려 있었는데, 『악학궤범』이나 『시용향악보』, 『악장가사』 등에는 실려 있지 않다.

96) 출사 후에는 또 다른 家鄉인 楊州에서 살았다. 그 때문에 그의 묘도 양주에 세워졌다.

무엇보다 먼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문헌 연구이다. 그런데 『악장가사』는 지금까지도 편찬 주체, 시기, 목적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이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논의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현전 『악장가사』의 印刊 시점은 宣祖의 ‘治績’을 노래한 <중광> 악장이 지어진 시점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종묘 악장은 아홉 개 묘실이 조선의 역대 왕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시기에 일차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시점에서 ‘종묘악장가사책’과 그 ‘언석 인본’도 편찬, 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묘실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새 악장을 첨입하기 이전에는 그 판본들의 효력과 효용이 스러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전 『악장가사』에 포함된 종묘 악장은 서지학적으로 볼 때 복각·보각의 자취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현전 『악장가사』에 포함된 종묘 악장이 <중광> 악장이 지어지기 이전 시기에 간행되었던 판본을 바탕으로 복각·보각하는 방식으로 첨입해서 간행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종묘 악장 언석 인본만으로 구성된 현전 『악장가사』의 ‘속악가사’ 부분만이 아니라 ‘아악가사’, ‘가사’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편찬, 간행되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저본들의 편찬 시기는 임진왜란 이전으로 소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악장가사』 저본이 편찬된 시기를 임진왜란 이전으로 소급할 때는 <서어부가후>에 등장하는 ‘밀양 박준’이란 인물에 주목하게 마련이다. 그가 간행한 악서에 <어부가>(장가)가 ‘쌍화점청가지속’과 혼재되어 있다는 이황의 증언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간행 악서’ 가운데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악장가사』뿐이다. 따라서 ‘밀양 박준’이 현전 『악장가사』 저본의 편찬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어부가후>에서 이황은 ‘밀양 박준’이 악서의 편찬자라고 밝히지 않았다. 서지학적으로 볼 때 현전 『악장가사』 또한 편찬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다. 아악과

속악으로 분류한 가사들을 한 책으로 모은 것일 뿐이다. 이황도 그렇게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밀양 박준’ 또한 전승되는 가사 인간 본 가운데 ‘동방의 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모아 복각해서 간행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밀양 박준’ 또한 『악장가사』 각 부분 저본의 편찬자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밀양 박준’의 역할이 없었다면 현전 『악장가사』와 같은 문헌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편찬자로서 역할은 희석되어도 『악장가사』와 ‘밀양 박준’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밀양 박준’이 현전 『악장가사』 저본을 만들어 인간하게 된 시기와 사회사적 맥락을 탐색해 보았다. 탐색 결과, 향촌 사회의 문화 풍토를 쇄신하려는 향촌 사족 출신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상도 중남부 지역에서 중북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주세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세붕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밀양 박준’의 존재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촌 사족 출신의 관찰사와 군수 등을 매개로 조정과 향당 사이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향촌 사회의 문화 풍토 쇄신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촌 사회 문화 풍토 쇄신 운동은 일찍부터 전개되었다. 연산군대에 이르러는 두 차례의 사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위축되기도 했지만, 중종반정(1506)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런 운동의 결과로 조정 음악에도 변화가 생겼다. ‘밀양 박준’에 의해 한 책으로 모아진 인본 중에 ‘가사’는 그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가사’ 판본은 1518년 이후에 편찬, 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면서 그 운동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기묘사화는 김종직 문인의 내부 분열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촌 사족 사회에서는 커다란 충격을 안겼던 듯하다. 향촌 사회의 문화 풍토 쇄신 운동은 거의 한 세대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활성화되는데, 그 중심에 선 인물 가운데 하나가 주세붕이었다. 주세붕은 기묘사회 이전에 김안국 등이 경상도 남부 지역에서 추진했던 사업, 즉 향촌 사족 사회 구성원들이 문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집요하게 추진했다. 그 결실이 바로 백운동서원이다. ‘밀양 박준’이 ‘아악가사’의 인본까지 포함해서 악서를 만들어 간행한 것은, 주세붕의 이러한 사업의 재추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밀양 박준’에 대한 정보가 유도원이 고증한 것보다는 『밀주구지』에서 설명한 것이, 실상에 더 부합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물론 ‘밀양 박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논의 과정에서 다루었던 박한주와 남곤은 모두 밀양 사족으로 김종직의 문도이자 문인이었다. 박한주는 갑자사화에 희생되었고(1504), 기묘사회를 주도한 남곤은 사후에 삭탈관직되었다(1558). 그로 인해 이들이 남긴 글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할 수 있는 문헌도 매우 소략하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문헌이 발굴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밀양 박준’의 악서 간행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상도 남부 지역에서 중북부 지역으로 확장해 간 향촌 사족 사회의 문화 풍토 쇄신 운동과 맞물려 있었다. 그런 점에서 ‘밀양 박준’이 밀양 풍류동 사람이라고 한 『밀주구지』의 기록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國立國樂院傳統藝術振興會 편, 『大樂後譜(全)』, 銀河出版社, 1989.
- 金明俊, 『『樂章歌詞』의 成立과 所載 作品의 傳承 樣相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명준, 『악장가사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4.
- 金智勇 해제, 『속악가사(俗樂歌詞) 상(上)』, 明文堂, 2012.
- 李佑成, 『高麗末·李朝初의 漁父歌: 唱과 詠을 通해본 『士大夫文學』의 性格의 一端』, 『成大論文集』 9, 성균관대학교, 1964, 5-28쪽
-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誌』, 密陽文化院, 1987.
- 朴秀憲, 『密州誌』, 密陽: 密陽郡鄉校, 1932.
- 박순문, 『박준과 악장가사』, 『密陽文化』 19, 밀양문화원, 2018, 45-53쪽.
- 위진, 『『新增類合』의 새김 고찰』,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7.
- 윤호진 역주, 『역주 악원고사』, 국립국악원, 2006.
- 이백순 역, 『미암일기』, 담양군, 2004.
- 이혜구,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 정재진 편역, 『益陽志 國譯』, 영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3.

<Abstract>

Identity of Miryang Park Jun and His Relation with Akjang-gasa

Yim, Ju-Tak*

Who was Miryang Park Jun 密陽 朴浚? How was he related to the book Akjang-gasa 樂章歌詞, a collection of songs for various rites in the Joseon Dynasty, Korea?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ruthful answers through dealing all the data, which could be related to those two questions 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 of his day. He has been treated as the maker or editor of that book, but recently the opinion that he did not have any relation with it become more persuasive. As Jungkwang 重光, a repertory of it was surely create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e could not go the publishing time of it back to before the time. However, there are some textual bibliographic evidences which imply such a probability as the book could be published by re-engraving the former version and adding the new Akjang, Jungkwang (song of praising King Seonjo 宣祖's virtue). As results, this study makes sure that the music book of Park's had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campaign which aimed to renovat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igent communities in the local areas of the country, Joseon in the first-half of the 16th century. Especially, it seems to be published keeping step with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campaign being led by Ju Sebung 周世鵬(1495~1554). Park maybe had mainly played roles as a musician and a calligrapher for the intelligent community of the local area neighboring the downstream of Nakdong洛東 river belonging to the Gyeongsang-do province, where the same campaign had got started most early and widely in the half-before of the same century. In such a socio-historical context, Park seemed to select some from several published versions of country music repertory and republish the same book as the original of Akjang-gasa. That way, we can put our trust the Milju 密州 documents on him more than those of Toegymunjibgojeung 退溪文集考證, a historical investigation of collections of Yi Hwang 李滉(1501~1570)'s writings.

Key Words : Miryang Park Jun, Akjang-gasa (a collection of music for various rites in the Joseon Dynasty), Ju Sebung, Jungkwang Akjang (song of praising King Seonjo's virtue), Korean classical poetry

■ 논문접수 : 2019년 11월 20일

■ 심사완료 : 2019년 12월 7일

■ 게재확정 : 2019년 12월 10일

